

조사보고서 2010-2

#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2010. 3

서대교, 김미화

**보험연구원**



## 머 리 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기능별 규제로의 정비라는 측면과 더불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가진 법률이다. 또한, 정부당국은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도입을 기초로 한 금융상품판매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은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의 강화를 수반한다. 그러나 금융권역별 영업행위 규제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와 규제차이에 의한 규제 차익 발생여부의 조사는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영업행위규제 강화정책 수립과 더불어 연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영업행위규제 위반 시 제재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권역별 제재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한 사항이 존재한다. 동일 또는 유사사항의 위반에 대하여 일부 업법에서는 제재사항이 있으나 다른 업법에서는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제재규정이 개별 업법별로 존재하나 제재의 내용이나 정도가 상이한 경우도 존재하여 영업행위규제 위반에 대한 금융권역별 제재규정의 정비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금융권역별 영업행위규제에 대한 분석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금융권역별 영업행위규제 차이의 개선과 관련된 정부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0년 3월

보 험 연 구 원

원 장 직 무 대 행 이 태 열



## <목 차>

요 약 .....	1
<b>I. 서 론 .....</b>	<b>11</b>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12
<b>II. 금융업권간 영업행위규제 차이 비교 .....</b>	<b>15</b>
1. 금융규제의 이론적 근거 .....	15
2. 영업행위규제 체계 .....	18
3. 권역별 영업행위규제 차이 비교 .....	26
4. 시사점 .....	63
<b>III. 영업행위규제의 해외사례 .....</b>	<b>66</b>
1. 적합성의 원칙 .....	66
2. 법령상 위반에 대한 제재 .....	75
<b>IV. 영업행위규제 차이 개선방안 .....</b>	<b>87</b>
1. 적용대상 상품의 명확화 .....	87
2. 상품구분에 따른 고객정보수집 서류의 간소화 .....	89
3. 고객의 정보제공 거부 시 적용 제외 .....	90
4. 보험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분류제도 필요 .....	91
5. 제재조치의 개선 .....	92
<b>V. 결론 .....</b>	<b>95</b>
참고문헌 .....	96
부록 .....	98



## <표 차례>

<표 II-1> 규제유형별 분류 .....	19
<표 II-2> 주요 공통영업행위규제 .....	23
<표 II-3> 보험 영업행위규제 .....	25
<표 II-4> 약관작성 및 필수기재사항 .....	28
<표 II-5> 약관변경신고 및 제출서류 명시 .....	30
<표 II-6> 약관교부 및 설명의 의무 .....	31
<표 II-7> 약관공시 .....	32
<표 II-8> 모집자격 제한제도 .....	33
<표 II-9> 등록에 관한 규제 .....	34
<표 II-10> 비대면채널 모집규제 .....	35
<표 II-11> 규제설명 의무 및 확인에 관한 규제 .....	37
<표 II-12> 안내자료의 기재사항 .....	38
<표 II-13> 단계별 안내자료 및 상품공시 .....	40
<표 II-14> 부실고지 금지 .....	41
<표 II-15> 계약내용의 일부비교 금지 .....	42
<표 II-16> 특별이익 제공 금지 .....	43
<표 II-17>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44
<표 II-18> 광고표시사항 및 금지사항 규정 .....	46
<표 II-19> 광고제한 .....	47
<표 II-20> 투자성 및 원금보장형 변액보험 영업행위규제 .....	48
<표 II-21> 적합성의 원칙 .....	49
<표 II-22> 약관제도관련 처벌조항 .....	51
<표 II-23> 판매자격제도 관련 처벌조항 .....	53
<표 II-24> 설명의무 관련 처벌조항 .....	54
<표 II-25> 단계별 안내자료 관련 처벌조항 .....	56
<표 II-26> 불완전판매금지제도 관련 처벌조항 .....	58
<표 II-27> 불건전영업행위금지 관련 처벌조항 .....	59

<표 II-28> 광고제도 관련 처벌조항 .....	62
<표 III-1> 미국의 변액보험 규제 .....	68
<표 III-2> 영국의 적합성원칙의 법률적 근거와 주요내용 .....	72
<표 III-3> 일본의 적합성원칙의 법률적 근거와 주요내용 .....	75
<표 III-4> FSA의 금전적 제재 현황: 2004~2008 .....	76
<표 III-5> 광고규제 .....	80
<표 III-6> 서면교부 의무 .....	81
<표 III-7> 금지행위 .....	82
<표 III-8> 손실보전 금지 .....	83
<표 III-9> 판매자격제도 .....	84
<표 III-10> 설명의무 .....	85
<표 III-11> 적합성원칙 .....	86
<표 IV-1>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옵션(원본보장) 유형 .....	89



## **The Improvements in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of the Financial Industries**

The implement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he revised Insurance Business Law is intended to improve the regulation system. Another purpose of the implementation is to strengthe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ith this trend, inevitable is reinforcing regulations of business conduct related to the reinforcement of the consumer protection. Thus, a study on comparing the differences of the business conduct regulation and the regulatory arbitrage among the financial industries is as important as strengthening the consumer protection.

In addition, the enforcement caused by the violation of the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has some issues on fairness among the financial industries. When a financial institution violates a certain regulation applicable to every financial sector, a penalty which it gets varies depending on which sector it belongs to.

In order to improve the disparity of these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industries, we need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variable insurance", an investment-type insurance product. Second, when the suitability rule is applied to insurance customers, a simplification of documentation procedures depending on types of insurance product is needed. Third, if a customer is not willing to release it when a insurance company collects some information from him/her, then an exception for applying the suitability rule may be considered. Fourth, insurance consumers have to be classified by insurance characteristics. Lastly, the unfairness of the law-enforcement from violating a certain business conduct regulation in the financial industries need to be resolved.



## 요 약

### I. 서 론

- 금융산업의 겸업화 및 규제완화가 지속되면서 금융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금융기관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
  -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으로 개별 금융시장간의 판매영역이 약해지면서 보험회사는 보험산업 내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와의 무한경쟁에 직면함.
  -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업권별 규제수준의 통일을 위해 금융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0년까지 금융상품판매법을 제정 할 것으로 예상
-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 규제체계를 열거주의(positive) 방식에서 포괄주의(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 열거주의의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 기관별 규율체제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 보험산업도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의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동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
  - 동 개정안은 적합성의 원칙, 소비자 구분, 상품설명 및 정보제공의무 강화 등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적용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 금융위원회는 2010년까지 금융상품판매법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동법은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금융상품판매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

율체계를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정비하는 것이 목적임.

- 그러나 현재의 규제 하에서는 투자성이 있는 보험 및 은행상품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간주하여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를 적용받음으로 이중 규제의 문제점 발생 가능성 존재
  - 자본시장법의 규제대상에서 보험 및 은행상품을 적용배제하지 않아 다른 금융권역의 침해 또는 규제의 중첩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음.
- 소비자보호 정책이 더욱 중요시되고 향후 금융상품판매법 제정 추진에 대비하여 영업행위 규제의 연구가 필요함.
  - 정부의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은 영업행위규제의 강화를 수반하므로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권간 영업행위 규제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규제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금융업권간 서로 다른 규제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조사와 더불어 서로 다른 금융권역에 대해 각각 상이한 규제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규제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

## II. 금융업권간 영업행위규제 차이 비교

- 보험업에서 영업행위 규제로 구분될 수 있는 제도는 약관제도, 판매자격제도, 상품설명제도, 불완전판매금지제도, 변액보험모집제도, 온라인판매제도, 광고제도 등임.

<요약 표> 보험영업행위 규제

영업행위 규제	근거 <sup>1)</sup>	주요 내용
약관제도	§127	회사는 보험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 신고, 보고 필요
판매자격제도	§83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
상품설명제도	§95	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안내 자료에 소속회사 상호나 명칭,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나 의무, 보장사항, 해약환급금, 예금 보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불완전판매금지제도	§97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두어 불완전판매 금지를 유도하고 있음.
변액보험모집제도 <sup>2)</sup>	시행령 및 감독규정	법시행령 42조, 감독규정 제7-45조, 제4-41조, 제41-3조의 2에서 변액보험 모집에 관한 규제를 함.
온라인판매제도	§9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에서 모집은 자격이 있는 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은 금지하며, 청약철회도 가능함.
광고제도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4에서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규제

주 : 1) 근거가 되는 법조문은 보험업법임.

2) 변액보험은 원금보장형과 원금손실형으로 나뉘며 원금보장형은 보험업법만 적용 받음.

- 영업행위규제 대부분은 권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기 위한 상품설명제도의 경우 개별 업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내자료의 기재사항은 권역별로 구체화하여 소비자를 보호
- 입법 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합성원칙의 경우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간 규제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보험은 비자발적 상품으로 체결 전 고객정보를 상세히 파악해야 할 경우에 영업의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적합성의 원칙이 도입되면 보험상품 가입의 복잡성 증가 및 중복·과다 서류 징구에 따른 고객의 불편 증대가 우려
- 법령상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금융권역별 제재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한 사항이 존재
- 동일 또는 유사 사항의 위반에 대하여 일부 업법에서는 제재사항이 있으나 다른 업법에서는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 제재규정이 개별 업법별로 존재하나 제재의 내용이나 정도가 상이한 경우도 존재
  - 등록요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업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자격취소나 등록의 효력정지 등을 부과
  -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

### III. 영업행위규제의 해외사례

#### 1. 적합성의 원칙

- 미국은 증권의 투자를 권유할 때 적합성원칙은 금융산업규제국 등 자율규제기관의 규정으로 정함.
- 1939년 전미증권업협회(NASD)는 적합성의 원칙을 채택
- 보험업에서는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의 모델법이나 모델규칙을 차용하여 각 주별로 적합한 보험규제를 적용
- 변액보험의 경우 복수의 규제를 적용 받음.
- NAIC는 증권거래의 적합성원칙 개념을 변액생명보험모델규칙에서 도입하여 보험회사에 사내기준의 작성을 부과

- 영국은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제정으로 적합성원칙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
  - 금융감독청(FSA) 규칙에서 판매자는 투신, 투자 및 저축성보험의 판매에 있어서 그 취급할 수 있는 상품 중에서 최적인(most suitable) 것을 추천
  - 금융감독청은 투자조언을 할 때에 적합성원칙을 적용
- 보장성보험의 경우 2005년 12월부터 FSA의 보험영업규칙(ICOB: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의 적용을 받음.
  - 보험영업규칙에서 비투자형보험의 경우 '적합한'(suitable)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데, 이는 '가장 적합한'(most suitable)이라는 투자성보험상품의 적합성원칙과는 상이
-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43조 제1호에서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적합성원칙이라고 함.
  - 미국에서 적합성원칙을 자율적인 규범으로 발전시킨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증권회사의 감독기준으로 증권거래법에서 규정
- 금융상품판매법에서는 설명의무 및 배상책임을 규정하였는데, 설명의무의 해석기준으로서 적합성원칙을 도입
  - 2006년 개정된 금융상품판매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고객에 대한 민사상의 불법적행위 책임을 고려하여 설명의무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금지규정을 신설
- 2006년 증권거래법을 개정된 금융상품거래법의 제40조는 증권거래법 제43조 제1호의 규정을 받아들여 적합성원칙을 명시
  - 고객의 지식, 경험, 재산 및 금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한 권유를 하여 투자자보호를 결하게 되거나 결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 업무를 영위함.

## 6 조사보고서 2010-2

- 투자형상품의 경우 동 법의 적합성원칙 등과 같은 공통영업행위규제를 은행법과 보험업법에서 준용하도록 요구
- 개정 보험업법(2006)은 금융상품거래법의 적합성원칙을 준용하고 있으며, 설명의무제도와 약관교부 및 정보제공의무를 부여
  - 적합성원칙의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회사별로 적합성원칙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립
- 일본에서는 비투자형보험상품과 관련한 적합성원칙은 적용을 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고객의 수요와 요구에 관한 정보 수집활동과 의향확인서를 통해 고객의 수요와 요구에 일치한 최선의 보험상품을 권유

## 2. 법령상 위반에 대한 제재

- 영국의 금융제재는 금융서비스감독기구인 FSA가 행정절차에 의해 부과
  - FSA의 제재는 제재제도의 공시와 이에 따른 제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크게 중시하여 운영
- FSA는 다양한 제재수단을 보유하고 조치하고 있음.
  - 과징금 및 제재, 업무 금지 및 승인 철회, 허가변경 및 취소, 금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범법행위에 대한 기소 등이 있음.
- 위반사항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벌 방식을 결정함.
  -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위반사항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을 경우, 위반사항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과거 규제사항에 대한 이행이 불량하였거나 위반 경험이 있는 경우 금전적 처벌 실시
  - 위반행위자가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발생한 소비자의 손실에 대하

여 적극 보상할 의사를 밝힌 경우 공개적인 문책 고려

- FSA는 규제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인가업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 FSA는 FSMA에서 부과하는 요건을 위반한 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금지, 위반행위의 구제조치의 마련, 당사자 자산처분 등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음.
  -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구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과 FSA가 직접 준사법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원상회복을 강제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음.
- 원상회복과 관련된 권한 행사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짐.
  - 위법행위로 발생한 이익이나 손해를 수치화 할 수 있는지 여부, 위법행위로 영향 받은 금융 소비자의 수, 권한 행사로 FSA에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금융소비자의 혜택과의 비교, 여타 구제제도를 통한 구제 가능성, 피해 당사자의 사적 구제능력
-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광고에 대한 규제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에 처함.
-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계약체결 전 서면교부의무, 계약체결 시 서면교부의무 및 고객이 예탁하여야 할 보증금의 수취와 관련 있는 서면의 교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서면교부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부과함.
-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보험업법 및 은행법에서는 모두 허위사실의 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에 대하여 각각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금융상품거래업에서는 요청받지 아니한 투자권유 및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의 재권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은 없음.
- 일본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료의 할인 및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 혹은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손실보전 또는 사전·사후적으로 이익을 제공하여 줄 것을 약속 혹은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에 처하나 은행업의 경우 특별이익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조항은 없음.
- 보험업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보험모집 및 금융상품 거래업자의 등록 거부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보험업법에서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부과함.
  -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
- 한편,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모집인, 특정소액단기보험모집인 등으로 보험모집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그 외 업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
- 보험업법 및 은행법에서는 보험모집인과 은행대리업자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000년 제정된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금융상품판매법)에서는 예금·보험·유가증권 등의 폭넓은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하여 민

법의 손해배상 규정의 특칙을 정하고 있음.

-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금융상품 거래업자의 고객에 대한 성실의무 및 적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보험업법에서도 보험중개인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상품거래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관련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IV. 영업행위규제 차이 개선방안

- 시행령에 위임할 보험상품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의 정의를 명확히 명시
  - 자본시장법에서 변액보험 중 만기시 기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보증하는 상품의 금융투자상품 제외여부가 불명확
- 적합성원칙에 의해 고객의 정보를 수집할 때 상품구분에 따른 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함.
  - 보험은 비자발적 상품으로 먼저 고객을 발견하고 지속적인 방문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체결 전 고객정보를 파악해야 될 경우 영업의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
  - 향후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표준안 제정 시 보험상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품구분에 따른 서류절차의 간소화 필요
-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때나 고객이 고위험군의 상품을 스스로 요구하는 경우에 적합성원칙 적용 제외를 고려
- 보험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분류제도가 필요함.
  - 보험업법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준용하여 전문보험소비자의 개념이 자산규모에 의해 결정

- 보험거래의 경험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구분이 필요하며, 이를 시행령에서 반영하여야 함.
- 금융권역별 제재의 불형평성 시정 및 제도 정비가 요구됨.
  - 법령상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살펴보면 금융권역별 제재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한 사항이 존재하거나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존재
  - 동일사항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제재규정이 개별 업법별로 존재하나 제재의 내용이나 정도가 상이한 경우
  - 금융업별 고유 업무가 가지는 특성 및 우리나라 금융현실을 고려하여 제재 체계를 정비하고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한 사항을 시정
- 개인과징금 제도의 도입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
  -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는 개인이 속해있는 법인의 이익을 위해 위법을 할 경우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법인은 제재 회피목적으로 내부통제를 통하여 직원들을 관리·감독할 동기 부여
    -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당해 법인은 이러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용한 직원의 관리·감독에 소홀
  - 그러나 법령위반을 한 개인에 대해 금전적 이익의 박탈인 과징금 부과 실효성을 확보 가능
-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의 구체화가 필요함.
  -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를 모든 위반행위로 적용하는 방식의 일반적·추상적 규정은 금융감독당국에게 제재운영에 있어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
  - 금전적 제재 위주의 제도 개선으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우리나라 금융시장 발전 속도에 비추어 점진적인 도입 필요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정부는 1990년대 말 외환·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보험업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sup>1)</sup>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의 개방과 경쟁을 불러왔고,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도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급속한 환경변화로 인해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존 금융규제체계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기존 금융규제체계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합한 법률 개선작업을 추진하여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sup>2)</sup>)’을 시행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의 감독 및 법률체계는 전업주의에 기초한 겸영금지의 원칙으로 본업을 열거하고 또한 부수업무에 대해서도 열거하는 열거주의였다. 따라서 보험상품은 보험업법에서, 은행상품은 은행법에서, 그리고 증권업관련 법률은 증권을 규제하는 체계이다. 법령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어려우며, 신종 금융투자상품 개발 시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열거한 후 취급 가능하게 되는 절차의 복잡성 등을 열거주의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자본시장법 제1조),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의 규제체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금융기관별 규율체제가 경제적 실

- 
- 1) 정부는 약 160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건전한 금융기관들도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금융기관으로 재편하였다.
  - 2)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의 자본시장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규율체계를 일원화하였다.

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되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권유의 금지 등의 선진국 수준의 투자권유규제를 도입하였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은 보험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의 전환이 요구되었으며, 보험상품의 정의나 업무영역의 확대 등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부문에서의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2008년 11월 4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동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동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 및 영업 자율성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개정안 제2조, 제19조, 제20조, 제95조의2, 제96조의2, 제127조의3)하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적합성원칙을 도입하고, 소비자를 일반소비자와 전문소비자로 구분하여 일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보호 차등화, 상품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 강화, 허위·과장광고 규제근거 마련, 기초서류 준수 의무 신설 등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대폭 적용하여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업권별 규제수준의 통일을 위해 금융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0년까지 금융상품판매법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법은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금융상품판매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율체계를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정비하는 것이다. 금융상품판매법이 제정되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제도 및 환경변화의 공통점은 일반소비자 및 투자자의 보호 강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 하에서는 투자성이 있는 보험 및 은행상품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간주하여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를 적용받음으로 중복규제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자본시장법의 규제대상에서 보험 및 은행상품을 적용배제하지 않아서 다른 금융권역의 침해 또는 규제의 중첩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sup>3)</sup>

3) 규제의 중복은 시스템의 안정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중복규제는 규제효과에 비해 피규제자의 부담을 과중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도 1998년 규제개혁 이후로 중복규제의 개선

금융투자상품으로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미비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투자성보험상품(자산연계형, 외화표시)은 발전가능성이 높으나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인하여 초보적 단계에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보험회사는 원금보장형 변액보험상품만 판매하는 등 상품개발 및 판매가 제한되고 있다.<sup>4)</sup> 또한, 금융위원회가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해 있는 판매행위규제를 통합하여 가칭 금융상품판매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제도적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를 의미하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의 강화를 동반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금융권역별로 존재하고 있는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차이를 조사해보고 주요 선진국의 입법사례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영업행위규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책감독당국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업권간 영업행위규제의 차이점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주요 금융선진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여 영업행위규제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조사 대상 국가는 통합금융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 및 일본을 포함하며, 적합성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미국도 조사대상국에 포함된다. 먼저 우리나라의 금융권역별 영업행위규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미국, 영국, 일본의 순으로 해당 국가를 조사한다. 선진국가의 조사에서는 적합성의 원칙<sup>5)</sup>과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만을 포함하는데, 이는 3개 국가의 영업행위

---

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복규제부문은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 4) 투자성 변액보험 시장에서 기납입보험료의 70%보장형 변액상품을 ING, 프루덴셜, 뉴욕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였으나, 2009년 2월 ING를 마지막으로 투자성 변액보험시장에서 모두 철수하여 동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 5)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된 적합성원칙은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의 적합성원칙을 그대로 차용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에 규제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의한 비용증가 및 소비자 불편증가가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조사에서 적합성원칙의 입법례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규제에 해당하는 모든 법령을 조사하기에는 시간이나 지면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원칙의 경우 규제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은 권역별로 상이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업행위규제 중 중복규제나 금융권역별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는 상기의 두 부분 만을 대상으로 해외사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법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및 은행법과 하위법령, 감독규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영국의 경우 금융서비스 시장법을 대상으로 하고, 금융감독청(FSA)이 제정 및 감독하는 일반영업행위규칙(COB: Conduct of Business)과 보험영업규칙(ICOB: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각 보험업법과 은행법 그리고 2006년에 제정된 금융상품거래법과 더불어 금융상품판매법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하위법령 및 보험회사 감독지침을 포함한다. 미국은 적합성원칙의 조사를 위하여 전미증권업협회(NASD)의 규정과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의 변액보험모델규칙을 포함한다. 또한, 미국 NAIC가 제정한 생명보험, 연금보험과 관련된 모델법과 뉴욕주의 보험법을 대상으로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기정(2007), 신상훈(2009)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통합에 따른 보험업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맹수석(2003), 김민식(2008)은 변액보험의 적합성원칙 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손영화(2007)는 증권규제에서 시작된 적합성원칙을 보험산업에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상우(2008)는 보험선진국의 판매권유 규제에 대한 조사를 투자형과 비투자형 보험상품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용찬(2007), 안수현(2008)은 우리나라의 금전적제재의 문제점 제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업권간 영업행위규제를 조사하고, 제 3장에서는 주요 보험 선진국의 영업행위규제의 입법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영업행위규제 차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 II. 금융업권간 영업행위규제 차이 비교

### 1. 금융규제의 이론적 근거<sup>6)</sup>

시장을 규제하는 이론으로는 공공이익가설, 포획이론<sup>7)</sup> 등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으나,<sup>8)</sup> 규제를 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행정권한 및 행정환경 등에 관한 성문법을 해석하는 규칙이다. 그리고 행정행위 측면에서 바라보면 규제기관이 달성해야 할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민간 경제주체인 개인, 기업 단체의 특정 활동이나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지도, 변경, 지원하는 행정작용이다.

금융규제란 금융시스템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어떠한 요구, 제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규 또는 감독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금융시장은 일반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며 이러한 규제와 감독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시장 자체가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의사결정도 효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금융분야에서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정부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자연독점 같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sup>9)</sup>의 요인들에서 찾을 수 있다.

Llewellyn(1999)은 금융시스템의 안전,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 유지,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금융규제의 목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규제 목적의 실현은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야기 할 수 있다.

Goodhart et al.(1998)은 금융규제의 근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 6) 보다 자세한 금융규제의 이론적 근거는 Goodhart et al.(1998)과 Llewellyn(1999)을 참고한다.
  - 7) 포획이론이란 규제를 받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에 로비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 8) 정부규제를 공공선택의 이론적 맥락에서 고찰한 학자들로 스티글러(George J. Stigler), 펠츠만(Sam Peltzman), 그리고 포스너(Richard A. Posner) 등이 있다.
  - 9) 시장이 불완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시장기구에 의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 한다.

이들은 금융규제의 근거를 독점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소규모의 소매고객 보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영업행위 규제를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할 경우 갖추어야 할 적절한 행동과 경영관행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규제는 거래상의 주인과 대리인이 동일하게 충분한 정보를 가지 않고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공시, 기업과 종업원의 자질, 공정한 영업 관행, 금융서비스와 상품의 판매방법 등이 규제대상이 된다. 거래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진입자격 설정, 선량한 행동과 윤리기준 설정, 피해 받은 고객을 도와주는 옴부즈맨 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대부분 전문직단체들에 의해 시행되는데 이런 단체들이 독점화되어 반경쟁적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자율규제조직의 이사회에서 비개업 회원과 고객이 다수가 되도록 만들거나 고객보호의 책임을 법적기구로 이전할 수 있다.

영업행위 규제는 소매영업과 도매영업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이유는 도매영업보다 소매영업의 경우 시장실패와 정보의 비대칭성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다. 소매고객은 반복적으로 금융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경험에 의한 학습이 제한되며, 소량구매의 경우 정보취득비용이 높고, 개인고객은 복잡한 금융계약을 맺고 정보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숙련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소매고객은 구매시점에 계약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반면, 계약기간은 장기이기 때문에 계약의 가치는 구매이후의 공급자의 행동에 의존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지만 개별 고객들은 감시할 위치에 있지 않다. 반면 도매영업의 경우 영업행위 규제는 그리 필요하지 않으며 규제는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규제기관의 역할은 이런 자율규제가 쉽게 만들어지고 적용되도록 감독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강력하게 제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규제의 이론적 근거를 주로 시장결함 또는 시장실패에서 찾게 되는 경우 항상 제기되는 문제는 정부의 개입이 시장실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에 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고 또 다른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즉 금융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융규제를 통해 금융시장에 개입을 하지만 이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금융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금융권역별로 시행되는 규제 강도가 동일한 기능이나 행위에도 불구하고 권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산업에 있어서 규제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살펴보면 크게 법률적인 측면과 감독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법률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동일한 행위나 기능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이 다를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상이한 제재조치<sup>10)</sup>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별 업법에서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벌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감독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감독기준의 상이함에 따른 감독의 형평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검사·감독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보험, 금융투자, 은행 및 여신전문업은 각기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 따라서 감독기준의 이원화는 규제의 형평성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방카슈랑스의 경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감독은 은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게 되므로 규제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일한 행위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법률의 적용이나 감독을 받음으로<sup>11)</sup> 해서 규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에서 규제차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규제차이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규제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동일한 기능이나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제체계를 개선하여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규제차익의 폐해를 완화시킬 수 있다. 다만 개별 산업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도 반영하여야 하며 확일

10) 예를 들어, 모집인 또는 투자자 등록요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업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자격취소나 등록의 효력정지 등을 부과하고 있다.

11) 농협법 개정안을 농협보험에 적용할 경우 보험업법과 하위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감독기준이 이원화되어 형평성 있는 감독이 매우 어렵게 되므로 규제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여 농협보험은 규제차익을 누릴 수 있다.

적이며 기계적인 규제는 지양하여야 한다.

규제체계의 정비에 따른 형평성 제고는 규제의 적용대상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달라져야 한다. 금융소비자 또는 금융투자자의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경우 규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규제의 적용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이 없는 금융기관에 해당 될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해당산업의 활성화를 지향해야 한다.

## 2. 영업행위규제 체계

### 가. 금융규제 체계

규제를 유형별로 분류를 하면 크게 진입/업무영역, 상품/영업행위/소비자보호, 자산운용/건전성 감독, 퇴출/구조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진입/업무영역 규제에는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진입기준, 주주 및 임직원의 진입기준, 내부통제기준, 유사금융행위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된다. 상품/영업행위/소비자보호규제에는 상품개발 및 판매관련 기준, 금융거래자에 대한 고지, 금융상품 운용내역 평가 및 공시, 건전영업질서 유지, 내부자거래 제한 등 불공정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금융거래관련 분쟁 해결절차 등이 있다. 자산운용/건전성 감독 규제를 살펴보면 자본·자산 등 건전성 감독기준, 유동성 감독 기준, 자산운용에 대한 감독기준, 금융회사 대주주 감독기준, 금융그룹 감독기준, 건전경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이 있으며 퇴출/구조개선 규제에는 영업정지, 인가취소,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금융회사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표 II-1> 규제유형별 분류

규제유형	규제 내용
진입/ 업무영역	금융회사 업무영역
	금융회사 진입기준
	금융회사 주주의 진입기준(소유규제)
	금융회사 임직원의 진입기준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유사금융행위(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제재
상품/ 영업행위/ 소비자보호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관련 기준
	금융거래자에 대한 고지
	금융상품 운용내역 평가 및 공시
	부당권유금지, 특별이익제공금지 등 건전영업질서 유지
	내부자거래 제한 등 불공정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금융거래관련 분쟁 해결절차
	금융실명거래, 금융거래정보·신용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기준
전자적 금융거래의 특성에 따른 금융이용자 보호기준	
자산운용/ 건전성 감독	자본·자산 등 건전성 감독기준
	유동성 감독기준
	자산운용에 대한 감독기준
	금융회사 대주주 감독기준
	금융그룹 감독기준
	건전경영에 대한 지도·감독
퇴출/ 구조개선 등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영업상 제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금융회사의 청산·파산, 합병·분할·분할합병·전환
	금융회사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
	금융유관기관의 설립근거 및 업무

자료 : 금융위원회, 2008.

## 나. 금융투자업

###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써,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하며(동 법 제3조), 금융상품 중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권한의 수익권은 제외한다. 원본 금액과 회수할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판매수수료, 보험회사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은 원본 금액에서 제외된다.

### 2) 영업행위규제

자본시장법은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규율체계를 가지는 법으로서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관한 법률이다. 따라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업종에 관계없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동 법은 6개의 금융투자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영업행위규제와 금융투자업별로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금융업별 규제로 구분된다(자본시장법 제4장 제1절 및 제2절).<sup>12)</sup>

공통영업행위규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자를 상대로 영업을 할 때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신의성실의무, 투자자구분, 고객숙지원칙(know-your-customer-rule)을 포함한 적정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약관규제, 광고규제,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수행하여야 하

12) 금융투자업별 영업행위규제로서 자기계약 금지는 매매업자, 임의매매 금지는 중개업자,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제한은 자산운용업자, 금전대여금지는 자문·일임업자,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분리는 자산보관관리업자 등이 있다.

는 것이 신의성실 의무의 주요 내용이다.<sup>13)</sup>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와 거래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차등화 된 행위규제를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자를 구분하고 있다.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원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이에 동의하면 해당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간주하고 일반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이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면담이나 질문을 통해 파악해야 하는 것이 적정성의 원칙에 포함되는 고객숙지원칙(know-your-customer-rule)이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해당투자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사실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 일반투자자의 특성(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에 적합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적합성의 원칙이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의무중의 하나로서 고객숙지원칙(know-your-customer-rule)과 더불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의무사항이다.

설명의무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수반하는 위험, 금융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기타 수수료 관련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반드시 일반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제거하여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설명의무의 강제성을 위해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 시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13) 영국의 경우 "Principles for Business"에서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제36조에서 성실공정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이나 전화 등에 의한 투자권유를 금지한 규정이 부당권유의 금지이다. 자본시장법 제49조는 금융투자업자의 일정한 부당투자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즉, 금융투자업자가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4호의 재권유 금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의 제정·변경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변경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를 하여야 한다.

투자광고 규제를 살펴보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에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였다. 그리고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포함되어서는 아니 될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동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투자자 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금융투자자의 손해는 금융투자업자가 배상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다.

<표 11-2> 주요 공통영업행위규제

규제 명칭	근거	주요 내용
신의성실의무	37조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수행
투자자 구분	46조	투자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
적정성 원칙	46조의2	투자를 권유하기 전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know-your-customer-rule) 파생상품 판매 시 해당 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할 때는 사실 통보·확인을 받아야 함.
적합성 원칙	46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는 불가
설명의무	47조	투자권유 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아야 함.
부당권유규제	49조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전화 등에 의한 투자권유 금지(unsolicited call 규제). 보험상품은 제4호 재권유금지 규제 적용 제외
약관규제	56조	약관의 제정·변경 시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의무화
광고규제	57조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투자광고 금지, 금융상품의 위험 등 투자광고의 필수 포함내용 제시
손해배상책임	48조	금융투자업자는 설명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짐.

## 다. 보험업

### 1) 보험상품의 정의

기존의 보험업법에는 보험상품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없었다. 다만 상거래를 규율하는 상법에서 보험계약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상법 제638조). 따라서 금융상품에 대한 보험업법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포괄적으로 정의됨에 따라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보험상품의 정의<sup>14)</sup>를 신설하였다.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 보험상품을 일반적 정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명시적인 포함과 명시적인 제외를 통해 보험상품의 구체성을 확보하였다. 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위험보장의 발생원인 및 보장내용에 따라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구분하였다.

## 2) 영업행위규제

보험업에서 영업행위규제로 구분할 수 있는 제도는 약관제도, 판매자격제도, 상품설명제도, 불완전판매금지제도, 변액보험모집제도, 온라인판매제도, 광고제도 등이 있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상품 판매·개발 등 영업자율성을 확대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였다. 적합성의 원칙 도입, 소비자 구분에 따른 보호 차등화, 상품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 강화, 허위 및 과장광고 규제근거 마련, 기초서류 준수 의무 신설 등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

14) 보험상품 정의 신설을 통해 금융회사의 상품개발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규제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표 II-3> 보험 영업행위규제

영업행위 규제	근거 <sup>1)</sup>	주요 내용
약관제도	§127	회사는 보험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 신고, 보고 필요
판매자격제도	§83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
상품설명제도	§95	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안내 자료에 소속회사 상호나 명칭,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나 의무, 보장사항, 해약 환급금, 예금보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불완전판매금지제도	§97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두어 불완전판매 금지를 유도하고 있음.
변액보험 모집제도 <sup>2)</sup>	시행령 및 감독규정	법시행령 42조, 감독규정 제7-45조, 제4-41조, 제41-3조의 2에서 변액보험 모집에 관한 규제를 함.
온라인판매제도	§9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에 모집은 자격이 있는 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은 금지하며, 청약철회도 가능함.
광고제도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4에서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규제

주 : 1) 근거가 되는 법조문은 보험업법임.

2) 변액보험은 원금보장형과 원금손실형으로 나뉘며 원금보장형은 보험업법만 적용을 받음.

## 라. 은행업

### 1) 은행상품의 정의

은행법에서는 은행상품에 대한 명시적이고 포괄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은행업의 정의에서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범위를 유추하는

것은 가능하다.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5)</sup> 즉, 은행법의 경우 ‘예금’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이 ‘예금의 수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은행업을 정의하고 있다. 여신상품에 대해서도 은행업 정의에서 ‘대출’로만 규정하고 명시적인 개념정의는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 2) 영업행위규제

은행법에서 명시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금지업무와 신용공여한도규제 두 가지가 있는데, 신용공여한도제도는 직접적 행위규제라기 보다는 은행에 신용위험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간접적 건전성감독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sup>16)</sup> 금지업무에는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업무용부동산소유 한도, 비업무용부동산 소유금지, 부당대출 금지 등이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주로 은행업 감독규정과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하여 운용하고 있다.

## 3. 권역별 영업행위규제 차이 비교

본 절에서는 보험산업의 영업행위규제를 중심으로 하여 약관제도, 판매자격제도, 상품설명제도, 불완전판매금지제도, 광고제도 및 법령위반 시 제재조치에 대한 권역별 규제의 내용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15)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16) 신용공여한도제도는 영업행위규제라고 하기보다는 집중위험(concentration risk)을 통제하는 건전성규제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그러나 자산운용을 직접적으로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편의상 행위중심의 규제로 분류한다.

## 가. 약관제도

금융거래 약관은 금융기관과 소비자가 지켜야할 거래의 기본적인 약속을 규정한 것으로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공정한 거래의 기본을 설정하기 위해 규제기관 감독 하에 표준약관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거래약관의 경우 각 금융권역별로 약관의 규제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먼저, 금융기관 전반의 약관에 대한 규제는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업법 별로 약관에 관한 규제근거를 두고 있다. 은행과 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에 대한 규제근거가 비교적 자세하게 되어 있어 약관과 관련한 체계적인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 금융투자업에서도 약관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가 존재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결여되어 있다.

먼저 약관의 작성과 관련하여, 보험업에서는 약관의 작성과 필수기재사항에 대해 보험업 감독규정 제7-58조 및 제7-59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약관을 작성할 때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의 이해, 합리적 기대수준, 사회적 공익에 반하지 않도록 하며 상법이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관련법령을 따라야 한다. 감독규정 제7-59조에서는 보험금지급사유, 보험계약무효사유, 면책사유 등 약관 기재 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등에 대한 심사항목 열거에 대해서도 감독규정 제7-83조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약관의 작성 및 운용기준에 대해서 은행업 감독규정 제85조에서 포괄적으로 설명 하고 있다. 동규정에서는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보호, 신의성실 원칙 준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약관의 작성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를 준용하고 운용 기준 및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표 II-4> 약관작성 및 필수기재사항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약관 작성 원칙	· 감독규정 제7-58조 (약관의 작성원칙)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 무)	· 감독규정 제85조 (약관의 작성 및 운용기준)
	- 소비자 이해, 합리적 기대 수준, 사회적 공익에 반하 지 않도록 하며 계약법, 약 관규제법 등 관련법령을 위 배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 표준약관 준용	-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 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 화·체계화된 용어를 사 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 하여 약관을 작성(제1 항)	-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보호, 신의성 실 원칙 준수,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유지 및 약 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에 위배되지 않아 야 함을 명시
약관 필수 기재 사항	· 감독규정 제7-59조 (필수기재사항)	· 금융투자회사의 약관 운용에 관한 규정 제3 조(표준약관의 사용)	×
	- 보험금지급사유, 보험계약 무효사유, 면책사유, 보험회 사의 의무범위 및 이행시 기, 계약자 등이 의무를 이 행하지 않는 경우 받는 손 실, 계약 해지시 당사자 권 리, 배당사항, 변동급부여 부, 예금자보험보호여부	- 금융투자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약관 심사 항목	· 감독규정 제7-83조(약관)	· 금융투자회사의 약관 운용에 관한 규정 제6 조(약관의 심사)	· 감독규정 제87조 (심사기준)
	- 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등에 대한 심사항목 열거	- 규정 제6조에서 금융투 자협회에 보고한 약관 의 심사항목을 열거	

약관변경신고 및 제출서류는 각 업법별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약관 변경신고는 금융권역별 공통사항으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한다.<sup>17)</sup> 변경내용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

17) 보험업법 제127조, 자본시장법 제56조, 은행법 제52조에서 각각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

준에 부합할 경우 보험업법은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자본시장법은 변경후 7일이내, 은행법은 변경 후 10일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업에서는 약 관 변경시 신고서, 기초서류, 선임계리사 확인서, 요율산출기관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에서는 제출서류에 대해서 포괄 적으로 정의되어있다.

---

하고 있다.

<표 II-5> 약관변경신고 및 제출서류 명시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약관 변 경 신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27조 (기초서류변경의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56조(약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52조 (약관의 변경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예정일 30일전에 신고, 단 변경내용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시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약관 내용 중 투자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거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정 및 변경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시 미리 신고하되,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 보고할 수 있음.</li> </ul>
약관 변 경 시  제 출 서 류 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규정 제7-81조(제출 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회사의 약관 운용에 관한 규정 제4조(개별약관의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0조(약관의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약관 변경시 신고서, 기초서류, 선임계리사 확인서, 요율산출기관확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약관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약관과 관계서류를 금융투자협회에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관 제정 및 변경시 당해 약관과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li> </ul>

보험업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보험자의 약관 교부·명시 의무이다.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개별적인 동의로 이루어지나,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보험제도의 성질상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 계약조항은 보통보험약관에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약관의 내용을 파악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의무를 보험회사에게 지우는 것이다. 은행업에서 명시적으로 약관교부의 의무를 두지는 않고 있지만, 계약체결시 약관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sup>18)</sup>, 동 세칙에서는 약관의 해석 또는 운용 시 지켜야할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의 약관교부의무 및 약관설명의 의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표 II-6> 약관교부 및 설명의 의무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약관 교부 의무	· 상법 제638조의 3 (보험약관의 교부명시 의무)	· 약관의규제에 관한법 률 제3조(약관의작성 및 설명의무)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약관의작성 및 설명의무)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 게 보험약관을 교부하 여야 함.	- 고객의 요구 시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 에게 교부하여야 함 (제2항).	- 고객의 요구 시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 에게 교부하여야 함 (제2항).
약관 설 명 의 무	· 상법 제638조의 3(보험 약관의 교부명시 의무)	· 약관의규제에 관한법 률 제3조(약관의작성 및 설명의무)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 세칙 제63조 (약관해석 및 운용)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 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	-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 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제3항).	- 계약체결 시 약관내용 을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 명하여야 함(제5항).

18)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각 금융권역별로 약관공시에 대한 규제 근거가 존재한다.<sup>19)</sup>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경우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은행업의 경우 약관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열람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영업점에 인쇄물 또는 고객전용 단말기 등을 통해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표 11-7> 약관공시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약 관 공 시	· 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2항	· 법 제56조(약관)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3조(약관해석 및 운용)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변경전 보험약관 및 판매증지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관 포함)을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제2항).	- 약관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열람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영업점에 인쇄물 또는 고객전용 단말기 등을 통해 비치하여야 함. 단,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제6항).

## 나. 판매자격제도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경우 각 업법에서 보험 및 금융상품의 판매를 위한 판매자격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은행업의 경우 판매자격제도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업에서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19)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2항, 자본시장법 제56조,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3조에서 각각 약관 공시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

임직원, 금융기관대리점 등이 계약모집을 할 수가 있다. 금융투자업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협회의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육을 마친 자는 투자권유가 가능하다. 은행법에는 대출상품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인을 둘 수 있지만 대출모집인의 자격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대출모집인의 등록요건은 금융감독원의 은행대출모집인 등록제의 실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 대출모집위탁업체 및 은행 대출상당사 등록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은행업에서 금융투자형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표 II-8> 모집자격 제한제도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모 집 자 격 제 한	· 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 시행령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의하여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제1항), 금융기관대리점(제2항)	-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해당)(제1항)로서 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육을 마칠 것(제2항)	

보험업에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분야 보험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

정도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도 보험업과 동일하여 자본시장법 제51조에서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역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에서는 모집인 등록 시 등록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기관별로 수수료는 차등적용을 하고 있는데 반해, 금융투자업에서는 등록수수료 납부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은행업의 경우 판매자격제도의 법률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은행 대출모집위탁업체 및 은행 대출상담사 등록에 관한 협약에 의해 대출모집인의 등록요건을 규제하고 있다.

<표 II-9> 등록에 관한 규제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등록요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li> <li>- 모집할 수 있는 자들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분야 보험으로 구분하여 등록요건 등을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li> <li>-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요건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대출모집위탁업체 및 대출상담사 등록에 관한 협약안</li> <li>- 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등록요건 규정</li> </ul>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27조(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제34조(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li> </ul>	×
등록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규칙 제28조 (등록수수료)</li> <li>- 설계사 6천, 대리점 2만, 중개사(개인 5만, 법인 20만), 금융기관대리점 100만원</li> </ul>	×	×

보험업의 특성상 비대면채널(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일정한 모집자격이 있는 자만이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전화로 모집을 할 때 보험계약자의 답변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하여 설명확인에 대한 근거 자료로 보관하여야 하며 청약서에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사이버몰에서는 자필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표 II-10> 비대면채널 모집규제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비 대 면 채 널 모 집 규 제	· 법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시행령 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또는 청약의 철회 관련 준수사항)	×	×
	- 모집은 자격이 있는 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은 금지하며, 청약철회도 가능해야 함.(법 제96조) - 전화 모집시 보험계약자의 답변내용에 대한 음성녹음 확보, 자필서명 확보(시행령 제43조2항) - 사이버몰에는 약관내용 표시, 전자서명을 받은경우의 자필서명확보, 보험협약과 및 증서 수령여부 확인(시행령 제43조4항)		

## 다. 상품설명제도

금융업자가 고객과 거래할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면, 고객은 거래 여부를 금융업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판단 할 수 있는데 이를 상품설명 의무라 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투자권유 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금융상품의 내용이나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이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에서는 보험약관의 교부명시 의무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안내자료 중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지 않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여 간접적인 방식의 설명의무를 부여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를 보험업법 개정안에 도입하여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설명 의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업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의거하여 금융거래조건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표 II-11> 규제설명 의무 및 확인에 관한 규제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설 명 의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명시 의무)</li> <li>·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제95조의2(설명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47조(설명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규정 제89조(금융거래조건 공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함.</li> <li>-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 2에서 보험상품 판매시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설명 의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함(제1항).</li> <li>-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함(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함.</li> </ul>

상품 안내자료의 기재사항은 금융권역별로 구체화 되어 있다. 먼저 보험업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제95조에서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호·명칭,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사항, 보험약관의 보장사항, 해약환급금,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변액보험자산의 원본손실 가능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이 보험안내자료에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투자업도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설명서의 작성과 공시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으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해당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청약기간, 납부기간, 해당 증권신고서의 사본과 투자설명서의 열람 장소 등이 있다. 은행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은행업 감독규정 제89

조 금융거래조건 공시를 보면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하고 상품의 거래조건 공시에 있어 오해·분쟁야기 우려 문구 표시는 금지하고 있다.

<표 II-12> 안내자료의 기재사항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안내자료의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li> <li>· 시행령 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li> <li>· 시행령 131조 (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규정 제89조(금융거래조건 공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과 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시행령 제42조 제1항)</li> <li>- 계약내용과 다른 사항, 선택적으로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열거하거나 다른 회사와 비교 등은 기재하지 못하도록 함(제2항)</li> <li>- 추가로 안내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험금이 금리연동되는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변동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심사관리번호, 보험상담/분쟁해결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됨.</li> <li>- 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해당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청약기간, 납부기간, 해당 증권신고서의 사본과 투자설명서의 열람 장소, 증권시장에서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이 행하여질 수 있다는 뜻, 청약일 전날까지는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 등이 기재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함.</li> <li>- 상품의 거래조건 공시에 있어 오해·분쟁야기 우려 문구 표시금지</li> </ul>

보험업에서는 2007년 4월부터 단계별 보험안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업 감독규정 제7-45조의 제2항에서 보험모집단계별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

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체결 전에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청약서부분을 전달하고 계약체결 후 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하고 보험계약관리내용을 년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 실적배당의 경우 운용설명서도 교부하고 계약체결 후 보험계약관리내용을 반기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 124조에서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교부는 증권의 취득이나 매도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품공시 제도는 각 권역별로 공시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sup>20)</sup>은 각각 감독규정과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상품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고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법에서 상품공시를 명시하고 있다.

---

20) 보험정보공시제도는 경영공시와 보험상품공시로 구분한다.

<표 II-13> 단계별 안내자료 및 상품공시

구분	보험	자본시장	은행
단계별 안내자료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모집단계별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함(제2항).</li> <li>* 권유시 : 가입설계서 제공</li> <li>* 청약시 : 상품설명서, 보험계약 청약서부분 및 보험약관, 변액보험의 경우 운용설명서 제공, 중요내용 설명</li> <li>* 승낙시 :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교부</li> <li>* 1년이상 경과된 경우 :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 1회 이상 제공, 변액보험의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으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li> </ul>	
상품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li> <li>· 시행령 131조 (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70조, 제72조, 제73조의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목록, 가입설계서, 보험안내자료 및 운용설명서, 계약관리내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상품, 대출상품, 파생상품의 필요공시사항 규정</li> </ul>

## 라. 불완전판매금지제도

보험업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에서 모집종사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엄격한 영업행위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은 부실고지 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험업법 제97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두어 판매금지를 유도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왜곡하여 알리거나 또는 중요사항들을 누락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47조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왜곡된 설명이나 누락 등을 금지하고 있다.

<표 II-14> 부실고지 금지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부 실 고 지 금 지	· 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법 제47조(설명 의무)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금지	-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 됨.	

계약내용의 일부비교 금지 규정은 각 권역별로 존재한다. 계약내용의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타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해당 계약이 우월하다고 알리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97조에 의거하여 금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비교광고에도 보험업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금융투자상품을 비교할 때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이 불리한 것으로 표시할 수 없다. 은행업도 이와 동일하며 다른 금융상품을 비교할 때는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II-15> 계약내용의 일부비교 금지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계약 내용 의 일 부 비 교 금 지	· 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시행령 제60조 (투자광고) 제3항	· 금융거래조건 공시 사항 중 (감독규정 제98조)
	- 계약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근거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금지	(투자광고 준수사항 규정) -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 금융투자상품의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것	-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현혹적이거나 타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행위 금지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특별이익의 제공은 금융 권역별로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다. 보험에서는 보험업법 제98조를 두어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일정한 형태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법에서 손실보전 등의 금지조항을 두어 손실보전 및 이익의 보장, 사후 이익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은행법 제81조에서는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제공이나 이익제공의 가장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한 과당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표 II-16> 특별이익 제공 금지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특별이익 제공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li> <li>- 금품,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보험료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료 대납, 대출이자 대납 등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li> <li>- 손실보전 및 이익의 보장, 사후 이익제공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81조(금지사항 등)</li> <li>-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제공이나 이익제공의 가장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한 과당경쟁 행위 금지</li> </ul>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에서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431조의 모집질서 확립을 두어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그리고 집합투자업자의 부당한 매수·매도행위나 인위적인 시세형성 행위,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은행업에서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88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을 두어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표 II-17>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구분	보험	자본시장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감독규정 제431조 (모집질서확립)	· 법 제71조,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시행령 제87조, 제99조,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감독규정 제88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 경쟁을 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그리고 집합 투자업자의 부당한 매수·매도행위나 인위적인 시세형성 행위 등을 규정	-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예금의 구속행위,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마. 광고제도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광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보험업법에서 보험상품 광고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는 부재하였으며 광고에 관한 일반법률인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왔다.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과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데, 광고표시사항 규정 중 보험상품을 광고할 경우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제 43-5조의 2에 이의 근거를 두고 있다. 보험업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광고표시 금지사항을 규제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4에서는 보험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포함사항 및 금지사항 등 허위·과장광고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계약전 상품설명서·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변액보험 관련 원본손실 가능성 등이 광고의 필수 포함사항이다. 또한 금지사항으로 합

리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표시하는 행위,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 광고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포함되어서는 안될 사항을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동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업의 경우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필요한 공시사항 전부를 광고에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상품내용 설명서를 참조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그 외 은행업은 광고표시 금지사항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표 II-18> 광고표시사항 및 금지사항 규정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광 고 표 시 사 항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규정 제435조의2(광고의 내부통제),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4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57조 (투자광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 78조(필요공시사항의 적용 예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작 및 내용에 있어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li> <li>- 변액보험(DC형)을 광고하는 경우, 원본손실가능성과 계약자 귀속, 과거운용실적을 예시적으로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 포함</li> <li>- 협회는 광고기준을 정하고 심사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업자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의 사항을 반드시 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 잡지 등 인쇄물에 의한 광고와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에 의한 광고의 경우 등 광고계약면적 또는 광고시간의 제약으로 필요공시사항을 전부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음. 다만, 생략된 내용에 관하여는 상품내용설명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뜻을 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의하면 계약전 상품설명서·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변액보험 관련 원본손실 가능성 등이 필수 포함 사항</li> </ul>		
광 고 표 시 금 지 사 항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3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57조 (투자광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금지</li> <li>- 개정안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의하면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표시하는 행위,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 광고하는 행위 등이 금지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케 하는 표시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금지</li> </ul>

금융투자업에서는 자본시장법에 의거 투자광고에 대한 제한이 있으나, 보험과 은행은 광고제한에 대한 명문의 규제가 없다. 자본시장법 제57조를 살펴보면 투자광고는 금융투자 회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표 II-19> 광고제한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	· 법 제57조(투자광고)	×
광 고 제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회사(협회, 발행자 등 포함)만 할 수 있도록 규정</li> <li>- 무인가 업자,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의 금융투자업 광고 금지</li> </ul>	

### 바. 변액보험 영업행위규제

금융투자업에서 금융투자상품은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원본손실이 있는 보험상품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원본보장형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업법의 영업행위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투자실적에 따라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투자성 변액보험과 원본을 보장해 주는 원본 보장형 변액보험의 두 가지 상품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원본보장형의 변액보험상품은 보험업법의 영업행위규제를 받게 되지만 투자성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공통영업행위규제를 받음과 동시에 보험업법의 영업행위규제도 받기 때문에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형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영업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고객의 특성을 파악할 의무, 적합성원칙, 광고규제, 부당권유금지(재권유 규제는 보험상품 적용 제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은 변액보험운용설명서 제공 및 중요사항 설명의무,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변액보험 광고의 내부통제 등의 변액보험 모집규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표 II-20> 투자성 및 원금보장형 변액보험 영업행위규제

	투자성 (자본시장법)	원금보장형 (보험업법)
신의성실의무	법 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감독규정 제4-31조의 2(변액보험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제1항 2호
투자자 구분	법 제46조 (적합성 원칙 등)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3(적합성 원칙 도입)
설명 의무	법 제47조 (설명 의무)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2(보험상품 설명의무 도입), 법시행령 제42조(보험안내자료 기재사항 등), 감독규정 제7-45조 ①,③(보험상품의 공시 등)
NYC Rule	법 제46조의2 (적정성의 원칙 등)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적합성 원칙 도입(\$95의3)
부당권유 금지	법 제49조 (부당권유의 금지)	감독규정 제4-31조의 2(변액보험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투자권유 준칙	법 제50조 (투자권유준칙)	감독규정 제4-31조의 2(변액보험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광고 규제	법 제57조 (투자광고)	감독규정 제4-35조의2(광고의 내부통제)
손해배상 책임	법 제48조 (손해배상책임)	법 제102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모집자격 제도	시행령 제56조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시행령 제56조 (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제4-41조(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

입법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합성의 원칙은 이중규제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내방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타 금융권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고 수집에도 어려움이 없지만, 보험은 비자발적 상품으로 먼저 고객을 발견하는데서 시작하여 지속적인 방문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체결 전 고객정보를 파악해야 할 경우에 영업의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적합성의 원칙이 도입되면 보험상품 가입의 복잡성 증가 및 중복·과다서류 징구<sup>21)</sup>에 따른 고객의

21) 보험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청약서, 정보활용동의서, 주요내용안내확인서(변액보험), 보험계약사항 비교안내 등 현재의 과다한 서류에 더하여 적합성 원칙 확인서(가칭) 등 유사내용의 서류를 이중으

불편 증대가 우려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객의 재산상태에 관한 질문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 올 수 있다.

<표 II-21> 적합성의 원칙

적 합 성 의 원 칙	<p>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 원칙 등)</p> <p>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3 (적합성 원칙) 도입</p> <p>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및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및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보험회사 및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확인 받아야 할 내용 및 확인 내용의 유지·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로 작성, 보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 사. 영업행위규제 위반시 처벌규정

일반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의 주요역할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며,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행위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와 건전성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감독, 조사 및 제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영업상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영업상 제재 체계는 제재방식 기준으로 금전적 처벌과 비금전적처벌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제재 대상 기준으로는 기관,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제재로 분류된다. 금전적 처벌(financial penalty)은 크게 행정적 처분이 강한 과태료 및 과징금<sup>22)</sup>과 형사처벌로 분류될 수 있는 벌금<sup>23)</sup>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비금전적 처벌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정지·기관경고,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문책적 경고<sup>24)</sup> 등이 있다.

### 1) 약관제도

약관교부의무 또는 약관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조항은 개별 업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공통적으로 준용하고 있다. 약관교부의무나 약관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약관변경신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1

22)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금전벌의 일종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에 대한 위반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조치를 의미한다. 과징금은 행정법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에게 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전적인 제재 조치이며, 만약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이익을 박탈하도록 행정제재금으로 부과된다.

23) 벌금은 형법이 정한 재산형으로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벌금은 금고, 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이며 납부 여부에 따라서 노역과 대체가 가능한 형벌이다.

24) 임원에 대한 제재로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등이 있고, 직원에 대한 제재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험회사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56조(약관)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 법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고 누락 등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표 II-22> 약관제도관련 처벌조항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약관 교부 의무	· 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명시 의무)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3조(약관의작성 및 설명 의무)	· 약관의규제에 관한법률 제3조(약관의작성 및 설명의무)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34조 제2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약관 설명 의무	· 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명시 의무)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3조(약관의작성 및 설명 의무)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3조(약관해석 및 운용)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34조 제2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약관 변경 신고	· 법 제127조 (기초서류변경의 신고)	· 법 제56조(약관)	· 법 제52조 (약관의 변경 등)
	- 보험회사가 제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기초서류를 변경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 직무대행자 또는 지배인이 제 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기초서류를 변경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제56조(약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 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 2) 판매자격제도

비대면채널 모집은 보험업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모집방식으로 비대면채널 모집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발기인 또는 이사 등, 규정위반자를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험회사는 1천만원, 보험회사의 발기인 및 규정위반 자는 5백만원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모집 자격을 등록할 경우, 보험업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에서 투자권유대행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격취소나 등록의 효력정지 등을 취하고 있다.

<표 II -23> 판매자격제도 관련 처벌조항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비 대 면 채 널 모 집 규 제	· 법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	×
	- 보험회사가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 직무대행자 또는 지배인은 보험회사가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
	-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등 록 요 건 규 정	· 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 법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제1항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격취소·등록의 효력정지 등을 취함	×

### 3) 상품설명제도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상품 판매시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설명 의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 보험료 100분의 25이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설명하고 투자자가 설명 의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표 II-24> 설명의무 관련 처벌조항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설 명 의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명시 의무)</li> <li>·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제 95조의2(설명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47조(설명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규정 제89조 (금융거래조건 공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li> <li>- (보험업법 개정안 제196조 제3항) 제95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당해 보험회사 또는 보험판매 전문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 100분의 25이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다만 보험회사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li> </ul>	×

보험업에서는 안내자료의 기재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보험회사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규정을 위반한 보험회사 발기인, 이사, 감사 또는 규정을 위반한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에서는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한 왜곡이나 기재누락의 경우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표 II-25> 단계별 안내자료 관련 처벌조항

구분	보험	자본시장	은행
단계별 안내자료 제도	· 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 법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
	×	-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내자료의 기재사항	· 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 법 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 시행령 131조 (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 감독규정 제89조(금융거래조건 공시)
	- 보험회사가 제95조(보험안내자료)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 직무대행자 또는 지배인은 보험회사가 제95조(보험안내자료)의 규정을 위반한 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제95조(보험안내자료)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4) 불완전판매금지제도

계약내용의 일부 비교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보험업법에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나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리고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비교광고를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은행업의 경우 특별이익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표 II -26> 불완전판매금지제도 관련 처벌조항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계약 내용 의 일부 비교 금지	· 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법 제57조(투자광고)	· 금융거래조건 공시 사항 중(감독규정 제 98조)
	-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의 규정(부실고지, 계약내용 일부비교 등)을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제57조(투자광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특별 이익 제공 금지	· 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81조(금지사항 등)
	-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금융기관감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의거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71조, 제85조, 제98조 또는 제108조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그 외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위반사항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은행업에서는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은행법 제53조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 동 법 제54조 임·직원에게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금융기관감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다.

<표 II-27> 불건전영업행위금지 관련 처벌조항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불 건 전 영 업 행 위 금 지	· 감독규정 제4-31조(모집 질서확립)	· 법 제71조, 제85조, 제98조,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감독규정 제88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1조, 제85조, 제98조 또는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li> <li>- 제71조(제7호), 제85조(제8호), 제98조(제2항 제10호) 또는 제108조(제9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li> </ul>	<p>- <b>법 제53조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b></p> <p>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li> <li>2.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li> </ol> <p>②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금융기관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li> <li>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에 위반한 경우</li> <li>3.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营业을 한 경우</li> <li>4.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ol>

불 건 진 영 업 행 위 금 지			<p>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0.1.21]</p> <p>- 법 제5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lt;부록참조&gt;</p>
---	--	--	--

### 5) 광고제도

광고표시사항이나 광고표시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하는 경우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회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은행업의 경우 광고표시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표 II-28> 광고제도 관련 처벌조항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광고 표시 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규정 제4-35조의2(광고의 내부통제),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57조(투자광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78조(필요공시사항의 적용 예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업법 개정안 제196조제1항제1호) 제95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하는 경우 :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7조(투자광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li> </ul>	×
광고 표시 금지 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4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제3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57조(투자광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업법 개정안 제196조제1항제1호) 제95조의4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하는 경우 :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7조(투자광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li> </ul>
광고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57조(투자광고)</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7조(투자광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li> </ul>	×

## 4. 시사점

약관제도는 개별 업법과 감독규정에서 약관의 규제를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전반의 약관에 대한 규제는 상법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업법과 상법 그리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혼용하여 약관을 규제하고 있다. 판매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과 보험업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경우 모집이나 투자권유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판매활동이나 투자권유 행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산업의 특성상 보험모집의 경우 비대면채널(전화, 우편, 컴퓨터통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비대면채널 모집관련 절차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기 위한 상품설명제도의 경우 개별 업법과 감독규정에서 공통적으로 규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내자료의 기재사항은 권역별로 구체화 되어 있다. 또한, 불완전판매금지에 대한 규제를 개별 업법이나 하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금융권역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광고제도 역시 각 업법 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준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영업행위 규제는 각 권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적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간의 규제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개정안의 통과는 투자성 변액보험상품에 있어서 자본시장법의 공통영업행위규제를 받음과 동시에 보험업법상의 영업행위 규제도 같이 받게 됨을 의미한다. 보험은 비자발적 상품으로 먼저 고객을 발견하고 지속적인 방문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체결 전 고객정보를 파악해야 될 경우에 영업의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적합성의 원칙이 도입되면 보험상품 가입의 복잡성 증가 및 중복·과다서류 징구에 따른 고객의 불편 증대가 우려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객의 재산상태에 관한 질문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 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투자성 변액보험상품에 적용 예정인 적합성원칙을 향후 다른 보험상

품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보험상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다 세분화된 적합성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법령상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금융권역별 제재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한 사항이 존재한다. 동일 또는 유사 사항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일부 업법에서는 제재사항이 있으나 다른 업법에서는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제재규정이 개별 업법별로 존재하나 제재의 내용이나 정도가 상이한 경우도 존재한다.

동일사항이나 유사사항 위반에 대하여 상이한 제재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등록요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업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자격취소나 등록의 효력정지 등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별이익제공 금지와 관련하여서도 권역별로 상이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험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광고표시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해당보험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투자업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업의 경우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제재근거는 은행법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광고표시금지사항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동일 또는 유사 사항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일부 업법에서는 제재사항이 있으나 다른 업법에서는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는 먼저 단계별 안내자료제도에서 자본시장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으나, 보험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은행의 경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은행법에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보험업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업권간 영업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을 살펴보았을 때, 동일 또는 유사사항에 대한 금전적 제재 부과 시 권역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동일 또는 유사위반 사항에 대해 일부 산업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타 권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권역간 발생하고 있는 제재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전적 제재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권역별 영업행위 규제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문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차이의 발생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자본시장법을 제외한 우리나라 은행 및 보험업법은 일본의 법률체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금융관련 법체계에서 존재하는 권역별 차이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규제차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대면채널모집에 대한 규제는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험산업에만 존재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경우 규제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규제차이는 유사한 업무를 여러 부처가 담당할 경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규제가 여러 부처별로 나뉘지면서 규제의 기준이 상이한 것들이 양산되고 이에 의한 규제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 Ⅲ. 영업행위규제의 해외사례

제 2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권역별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차이를 조사하였다. 권역별 영업행위규제의 차이점을 조사한 결과, 적합성원칙에 대한 규제의 중복문제 발생 가능성과 법령상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에서 불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법령상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와 적합성의 원칙에 대한 금융선진국의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 1. 적합성의 원칙<sup>25)</sup>

##### 가. 미국

증권의 투자를 권유할 때 적합성 원칙은 금융산업규제국(FINRA: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등 자율규제기관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만, 기원은 1930년대의 간판이론(Shingle theory)<sup>26)</sup>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간판이론에 의해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이른바 투기성 저가주(penny stock)<sup>27)</sup>의 거래 등에 관한 적합성원칙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투기성 저가주에 대한 규제를 하였다.

1934년 증권거래법은 NASD(전미증권업협회)<sup>28)</sup>에게 공정하고 형평한 거래 원칙을 조장할 규칙제정권을 주었다. 이후 1939년 NASD는 법의 규정에 따라

---

25) 적합성의 원칙이란(Suitability rules) 증권 등의 투자권유자가 투자상품에 대한 의뢰를 받을 경우 투자자의 요구에 적합한 투자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태·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가 아니면 고객에게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26) 간판이론은 브로커·딜러가 간판을 걸고 증권투자상품을 권유할 때 투자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묵시적인 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이론이다. 간판이론은 1943년 제2연방항소법원이 선고한 Charles Hughes & Co. v.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판결에서 최초로 채택되었다.

27) 장외시장에서 팔리는 저가격의 주식을 말한다.

28)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적합성원칙을 채택하게 되었다. NASD 규칙 2310에 의하면, 회원이 고객에게 증권거래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증권보유,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추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NASD의 규칙 2310 (a)항은 고객의 자발적인 정보제공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었지만, 1990년에 추가된 NASD 규칙 2310의 b)항은 “SEC에 등록된 증권상품을 판매할 때 증권 중개인은 뮤추얼펀드(Money Market Mutual Fund)에 투자하는 경우 및 기관투자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에 대해 거래를 추천함에 있어서 그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①고객의 재무상황, ②고객의 세금상태, ③고객의 투자목적 및, ④고객에 권유를 하는 때에 당해 회원 또는 등록대리인에 의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거나 사용되는 그 밖의 정보이다”로 정보수집의무를 명시하여 고객의 지식이나 투자경험, 재산상황 등 투자권유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sup>29)</sup>

보험업에서는 NAIC(全美보험감독관협의회)가 모델법 및 모델규칙을 채택하고, 많은 주정부가 이것을 바탕으로 보험법 및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각 주정부가 보험사업의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변액상품에 대해서는 복수의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 증권법 등에서 증권의 정의가 폭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 상품도 증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액보험에 대한 규제는 각 주의 보험법과 더불어 연방 증권3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sup>30)</sup>

29) 적합성원칙의 위반유형으로서 부실표시, 과잉권유, 과당거래, 손실부담약속행위 등이 있으며, 위반사안에 따라 행정적제재, 형사적제재, 민사적제재를 가할 수 있다.

30) 예를 들면, 변액상품 모집인은 NASD에 등록하여 NASD 회원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적합성원칙을 포함한 NASD의 규칙을 적용받게 된다.

&lt;표 III-1&gt; 미국의 변액보험 규제

업무의 종류	근거법	규제 주체
변액보험·변액연금의 인수(발행)	각주 보험법 유가증권법(1933)	각주 보험청 증권거래위원회
변액보험·변액연금의 판매	각주 보험법 유가증권법(1933) 유가증권거래법(1934)	각주 보험청 증권거래위원회

자료 : 이상우, 2008.

NAIC는 변액상품에 관하여 모델법 및 모델규칙을 채택하고 있다. 1974년에 채택된 변액생명보험모델규칙(Variable Life Insurance Model Regulation)에는 변액보험 모집인에 대한 자격요건, 적합성원칙, 보험증권에 기재할 중요사항, 특별계정의 설정 등의 영업행위 및 자산운용규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보험상품으로서의 변액보험이 충족되어야 할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규칙은 증권거래에 있어서 적합성원칙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험회사에 사내기준의 작성을 부과하고 있다. 즉, “보험자가 계약자의 보험가입 목적, 투자목적, 재정상태, 니즈 등의 충분한 정보를 기초로 당해 상품의 구입이 예비 고객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 권유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3c)”고 한다. 또한 적합성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령, 수입, 배우자의 유무, 피부양자의 수 및 연령, 저축 및 기타 자산가치, 현재의 생명보험 가입의 상황” 등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2003년에 고객과 상품을 한정하여 부분적인 적합성원칙을 도입한 연금거래의 고령자보호모델규칙(Senior Protection in Annuity Transaction Model Regulation)<sup>31)</sup> 채택되었다. 2006년에는 연금거래의적합성모델규칙(Suitability in Annuity Transition Model Regulation)을 새로이 채택하여 적합성원칙과 관

31)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대상은 고령(65세 이상) 소비자에 대한 연금(정액·변액)의 판매이며 변액연금에 대하여 NASD규칙을 준수하면 본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령소비자에게 연금 추천 시 재무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고령소비자에게 적합한 추천을 하여야 하며,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 또는 태만한 경우에는 실제로 알고 있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다.

련된 NAIC의 이전 규칙을 개정하였다. 이 모델규칙은 종래 65세 이상에서만 인정되던 적합성원칙을 모든 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개인연금판매에 있어 모든 연령의 개인연금 투자자에게 적합성원칙과 감독기준이 적용된다. 동 규칙은 “보험회사 또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연금 또는 연금 승환을 권유할 경우 소비자의 금융상태, 소비자의 세무상태, 소비자의 투자목적, 그리고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자(보험모집인이 없는 경우)가 소비자에게 권유함에 있어서 상당히 이용되거나 고려되는 기타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비투자형 보험상품의 적합성원칙과 관련하여 2000년 NAIC에서 「생명보험·연금 판매의 적합성」을 작성하였다. 모델규칙의 초안은 생명보험 상품을 포함한 것이었으나 추후 연금만을 대상으로 한 규칙으로 채택되었다. 증권과 보험의 상위 및 정보공시·자기책임의 중시, 보험모집과 관련한 모델규칙의 존재, 고객정보 수집 비용소요 등의 이유로 생명보험 업계가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 나. 영국

영국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을 제정하여 법률상으로 정부가 최종적인 금권금융규제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나, 대부분의 규제권한을 증권투자위원회(SIB, 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에 위임하였고, 증권투자위원회는 자율규제기관(SRO, Self Regulatory Organization)을 설립하여 감독을 하는 체제였다. 이러한 체제 개시 시에 “투자성·저축성보험 및 투신의 판매자는 독립중개사(independent intermediary)<sup>32)</sup>이든가 전속대리인(company representative, tied agent)의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양극화 원칙<sup>33)</sup>이 도입되었다.

32) 독립중개사를 독립금융중개사(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라고도 한다. 영국에서는 복잡한 저축시장으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는 금융기관과 결부되어 있는 중개사나 독립금융중개사의 투자조언에 의뢰하여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있다.

33) 독립중개사는 독립중개사협회(FIMBRA: Financial Intermediaries Managers and Brokers Regulatory Association), 전속판매원의 경우 전속보험설계사협회(LAUTRO: Life Assurance and Unit Trust Regulatory Association)가 자율규제기관으로서 감독을 하던 것으로 2004년 폐지되었다.

당시 적합성원칙은 SIB규칙 수준에서 도입된 것이며, 미국의 증권관련규제에 적용되던 부분을 도입하였던 것이다. 적합성원칙은 Core Rule 16 Suitability에 규정되어 있으며, 고객에게 그 거래가 중요할수록 중요한 적합성기준이 적용된다. SIB 규칙에서는 적합성원칙에 관한 추상적인 규정<sup>34)</sup>이 도입되었는데, 각종 SRO의 규칙에서는 SIB 규칙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규칙을 책정하였고, FIMBRA규칙 및 LAUTRO규칙에서도 SIB규칙을 구체화한 규정이 정해지는 것으로 되었다. 독립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FIMBRA규칙에서는<sup>35)</sup> 고객의 사정을 아는 것(Know your client), 고객에게 가장 알맞은 조언을 제공(Best advice), 투자에 수반하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Understanding of risk)가 도입되었다. 전속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LAUTRO규칙도 이와 유사하며, 고객에게 가장 알맞은 조언을 제공(Best advice)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계약만을 추천할 것으로 의무화 하였다.<sup>36)</sup> 양극화규칙 도입 당시 적합성원칙에 관한 문서교부의무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1995년에 투자성·저축성보험 판매에서 적합성에 관한 문서교부(Reason why letter)를 의무화 하였다.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Financial Service Markets Act)<sup>37)</sup>을 제정하였다. FSMA하에서 적합성원칙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FSA 규

34) SIB Rule, 5.01: Suitability of Investments and transactions in them, 5.02, 5.03:Best Advice.

35) FIMBRA Rules(C. Conduct of Business) 4.2: Know your client, 4.3: Understanding of risk, 4.4: Best advice.

36) The Rules of LAUTRO(Schedule 2, Conduct of conduct for members), 6-8 "Best advice to be given".

37) 금융서비스시장법은 종전의 개별법으로 존재하던 보험회사법, 은행업법, 금융서비스법, 주택공제조합법, 공제조합법 등 5개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감독당국을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으로 일원화 시킨 통합금융법이다. FSMA의 체계를 살펴보면, Part 1은 FSA의 설치근거, Part 2~8은 사적규제 또는 건전성규제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설립인가, 행위 사전승인, 금융영업이전, 공시와 시장남용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Part 9~14는 FSA의 권한으로서 규제처분, 제재조치, 영장에 의한 수색, 조사 등 각종 사후적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Part 15~17은 소비자 피해보상, 음부즈맨 등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Part 18~22에서는 증권거래소, 어음결제소 등 자율규제시스템 및 금융전문가, 회계사, 보험계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Part 20~23에서는 기록유지 및 비밀보호, 통지 등 행정절차와 형사처벌 및 기소, 손해배상과 용어 해석 등에 관련된 기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경영(2007)을 참고한다.

칙에서는 “투자 및 저축성보험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경우, 그 조언이 고객에게 적합(suitable)하다는 합리적인 단계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 판매자는 투신, 투자 및 저축성보험의 판매에 있어서 그 취급할 수 있는 상품 중에서 최적인 (most suitable) 것을 추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취급상품 중에 고객에게 적절한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추천을 하여서는 안 된다”<sup>38)</sup>고 정해져 있다. 다만, 금융상품시장에서 영업이 가능한 독립금융중개사(IFA) 등의 경우 자신이 취급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FSA는 투자조언(investment advice)을 할 때에 적합성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FSA가 정한 일정한 양식에 고객 정보의 수집의무와 적합성통지서(suitability letter)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적합성통지서는 일정한 양식 없이 판매자의 자율적 양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sup>39)</sup> 투자 및 저축성 보험의 경우 위험선호도 및 가계상황을 고객으로부터 파악해야 될 정보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들 정보에 대해서는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규칙상 판매원은 고객에게 수집한 정보가 올바른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주로 고객의 서명을 받고 있다.<sup>40)</sup>

보장성보험의<sup>41)</sup> 경우 2005년 12월부터 FSA의 보험영업규칙(ICOB: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sup>42)</sup>의 적용을 받고 있다. ICOB에서 비투자형보험의 경우 ‘적합한’(suitable)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가장 적합한’(most suitable)이라는 투자형보험상품의 적합성원칙과는 다른 정의이다. 보험중개인

38) COB 5.3.5R.

39)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i) 고객에 대한 거래보고서, 사실 확인서류 등으로 대체가능, ii) 개인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작성 및 제공 필요, iii) 알기 쉬운 용어로 기술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iv) 정확하고 명료한 메시지 중심으로 기재한다.

40) COB 5.2.11G.

41) 영국의 경우 2005년 EU보험중개사지침 및 EU비대면판매지침을 국내법화 하여 보장성보험 판매중개사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대한 신판매규칙을 규정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영화(2007)를 참고한다.

42) 보험영업규칙은 보험업자 또는 보험중개사가 비투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또는 보험중개행위의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영업에 관한 규칙이다.

은 보험계약자에게 보장성계약을 추천할 경우 그 시점에서 고객의 수요와 요구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43)</sup> 다만, 보험중개인은 고객의 수요와 요구를 전부 충족하는 보장성보험이 없는 경우 또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시점에서 당해 계약에 의해 고객의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고객에게 확인시키는 경우에는 고객의 모든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보장성보험계약을 개인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거래상품 중에 고객의 요구에 완전히 일치하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취지를 고객에게 완전히 이해시키면 고객의 요구 전부에 일치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sup>44)</sup>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최적의 조언(Best advice) 의무는 없다. 따라서 전속 판매원 이외의 독립금융중개사 등에 대하여 선량한 조언(Good advice)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고객이 보장받기를 희망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 수준이 충분한 것인가, 계약의 비용,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면책사항이나 한도금액 등의 조건에 관한 조항 등이 보장성보험 계약의 적합성원칙 평가 시에 고려해야 될 주요 사항이다. 이러한 일반원칙 외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정보수집의무, 문서교부의무가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의무는 전화에 의한 비대면판매에 대해서도 부과하고 있고, 전화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체결 후 명세서(statement)를 속히 송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III-2> 영국의 적합성원칙의 법률적 근거와 주요내용

도입년도	법률명	대상상품	주요 내용
1986	금융서비스법 체제	투자형보험	추상적인 규정(Best Advice)
1995	금융서비스법 체제	투자 및 저축성보험	적합성에 관한 문서교부 (Reason why letter)
2000	금융서비스 시장법 체제	투자 및 저축성보험	최적의 상품(most suitable) 추천
2005	금융서비스 시장법 체제	비투자형보험	완화된 적합성원칙(Good Advice), 적합한(suitable) 상품 추천

43) ICOB 4.3.1R(1)

44) ICOB 4.3.1R(3)

## 다. 일본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43조 제1호에서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적합성원칙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sup>45)</sup> 미국에서 적합성원칙을 자율적인 규범으로 발전시킨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증권회사의 감독기준으로서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적합성원칙에 위반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권회사 및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만(증권거래법 제56조 제1항 제3호, 제64조의 5 제1항 제1호)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정하여져 있지 않다.

금융상품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상품판매법”)<sup>46)</sup>에서는 설명의무 및 배상책임을 규정하였는데, 설명의무의 해석기준으로서 적합성원칙을 도입하였다. 2006년 금융상품판매법을 개정하였는데, 개정 법률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고객에 대한 민사상의 불법적행위 책임을 고려하여 설명의무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금지규정을 신설하였다(동법 제4조). 금융상품판매법 제3조 제2항에서는 “고객에 대한 설명은 고객의 지식, 경험, 재산 상황 및 당해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에 비추어서 당해고객을 이해시키는데 필요한 방법 및 정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설명의무의 위반은 금융상품판매법상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이 된다. 다만, 금융상품판매법에서는 대상을 포괄적인 금융상품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법 제2조에 의해 대상을 한정 열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가 힘든 문제점이 발생한다.

2006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한 금융상품거래법<sup>47)</sup>은 금융상품마다 나누어져 있던 법적 규제를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일원화하고, 또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여 투자자유형에 대응한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였다.

45) 1992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적합성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46) 금융상품판매법은 금융상품판매시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 및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의 추정, 판매업자에게 권유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지침 마련과 그것에 대한 명확한 공표 의무를 부과하였다.

47) 금융상품거래법은 영국의 금융시장서비스법을 모델로 한 법률로 증권거래법, 금융선물거래법, 상품펀드법, 투자자문업법, 투자신탁법 등 5개의 금융관련 법률을 통합한 법률이다.

금융상품거래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거래 시에는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업자에 대해 엄격한 행위규제가 적용되지만, 전문투자자와의 거래에서는 행위규제의 일부가 적용 면제 된다.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관점에서 동법을 금융상품의 판매·권유에 관한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되어 금융상품에 대하여 행위규제를 업종에 불문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금융상품거래법 제40조는 증권거래법 제43조 제1호의 규정을 받아들였는데, “금융상품거래업자는 업무의 운영상황이 금융상품 거래행위에 관해 고객의 지식, 경험, 재산 및 금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한 권유를 하여 투자자보호를 결하게 되거나 결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 업무를 영위하여야 한다”고 적합성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 보험업법(2006)은 금융상품거래법의 적합성원칙을 준용하고 있으나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투자형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원칙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금융거래법상의 적합성원칙과 동등한 수준의 적합성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개정된 보험감독지침에는 고객의 특성을 파악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별로 적합성원칙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립해야 하며, 이에 보험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sup>48)</sup> 개별 업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의 적합성원칙 등과 같은 공통영업행위규제를 준용하도록 하는 까닭은 투자형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이 이미 은행업과 보험업에 의한 소비자 보호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금융상품거래법의 직접적인 규제가 적

48) 필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TM·CM·DM 등 비대면채널의 엄격한 관리
  - ② 고객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과 충분한 설명방안
  - ③ 수집한 고객정보를 기초로 적합한 권유를 이행시 소비자 보호에 결여할 우려가 있는지
  - ④ 사후적으로 수집한 고객정보 보관방법과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활용 체제
  - ⑤ 보험회사의 사전적인 고객정보의 보호 및 활용방안
  - ⑥ 자율적 적합성원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내부 감사부문의 모니터링과 검증방안
- 이상우(2008), 85p.

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비투자형보험상품과 관련한 적합성원칙은 적용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고객의 수요와 요구에 관한 정보 수집활동과 의향확인서를 통해 고객의 수요와 요구에 일치한 최선의 보험상품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I-3> 일본의 적합성원칙의 법률적 근거와 주요내용

도입년도	법률명	대상상품	주요 내용
2000	금융상품판매법	동법에 열거한 금융상품	설명의무 및 배상책임
2006	금융상품판매법	투자상품	적합성원칙 도입
2006	보험업법 개정	특정보험계약	적합성원칙 도입

주 : 특정보험계약은 변액보험·연금, 해약환급금변동형보험·연금, 외화표시형보험·연금을 대상  
 자료 : 이상우, 2008.

## 2. 법령상 위반에 대한 제재

### 가. 영국

영국의 경우 금융서비스감독기구인 FSA가 행정절차에 의해 금융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FSA의 제재는 제재제도의 공시와 이에 따른 제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매우 중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과징금 및 제재(penalties and censures), 업무 금지(prohibition orders) 및 승인 철회(withdrawal of approval), 허가변경 및 취소(variation and cancellation of permission), 금지명령(injunction), 원상회복명령 restitution and redress), 범법행위에 대한 기소(prosecution of criminal offense) 등과 같은 다양한 제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 1) 공개문책 및 금전적 처벌

FSA는 FSMA에서 부과하는 요건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문책(public censure) 및 금전적 처벌(financial penalty)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FSMA section 66, Handbook EG 7, DEPP 6).<sup>49)</sup> 정기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보고서의 제출을 지연하는 행위는 금전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FSA 핸드북(DEPP 6.5)에서 금전적 처벌의 적정수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법·부당행위의 중대성, 위법·부당행위의 고의 또는 중과실 정도,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재정상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 위법행위 발생 후의 조치 상황, 과거 제재 및 준법 전력, 과거 FSA 및 다른 규제기관이 취한 제재 조치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위반사항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을 경우나 위반사항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그리고 과거 규제사항에 대한 이행이 불량하였거나 위반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금전적 처벌을 실시한다. 위반행위자가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발생한 소비자의 손실에 대하여 적극 보상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공개적인 문책을 고려할 수 있다.

<표 III-4> FSA의 금전적 제재 현황: 2004~2008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벌금부과액	£24,769,000	£16,905,000	£13,309,143	£5,341,500	£22,655,428
건수	32	20	28	22	49

자료 : FSA, <http://www.fsa.gov.uk/Pages/About/Media/Facts/fines/>

## 2) 업무금지 및 승인철회

인가업자가 행하는 규제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fit and

49) DEPP는 결정과정 및 처벌에 대한 매뉴얼(Decision Procedure and Penalty Manual, 이하 'DEPP')이며, EG는 시행지침(Enforcement Guide, 이하'EG')이다.

proper)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금지명령(prohibition order)을 FSA에서 부과할 수 있다(FSMA section 56(1),(2)). 적격요건에는 정직, 신실과 평판, 행위능력, 재정적 건전성이 포함된다. 또한, FSA는 위반행위자가 소비자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 과거의 제재 사실이나 FSA 규정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금지 명령의 적용을 결정하며, 이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인가업자는 금지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이 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유죄로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피승 인자가 승인을 받은 직무수행에 적격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그 승인을 철회 할 수 있다(FSMA section 63).<sup>50)</sup>

### 3) 허가의 변경 및 취소

FSA는 금융회사 및 허가받은 개인이 자격요건, 영업요건 등 기본인·허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 FSMA Part IV의 허가를 취득한 규제업무를 12개월 이상 영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Part IV의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바람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거나, 국외의 규제기관의 지원을 위한 경우에도 허가의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다.(FSMA section 45, 47, Handbook EG 8). 허가취소의 절차는 각 이해관계자에게 대하여 허가취소 통지 후 결정통지가 발송되며, 허가취소 결정에 불복 시 금융업항고법원(Tribunal<sup>51)</sup>)에 제소할 수 있다.

### 4) 금지명령

FSA는 FSMA에서 부과하는 요건을 위반한 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금지, 위반행위의 구제(remedy)조치의 마련, 당사자의 자산처분 등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FSMA section 380, 381). FSA는 금지명령신청의 대체수단으로 법원에 「자

50) 양 권한의 상이점 및 행사권한의 선택기준은 FSA 핸드북(EG 9)의 지침을 참조한다.

51) FSMA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업관련 특별심판부로 FSA의 인가, 승인 및 각종제재조치에 대한 불복사항을 다루며 FSA의 결정을 대체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무부 소속으로 변호사 및 기타 금융전문가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산동결(asset-freezing)명령」 행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FSA는 위반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Handbook EG 10).

### 5) 원상회복명령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구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과 FSA가 직접 준사법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원상회복을 강제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FSMA section 382, 383, 384, Handbook EG 11). 법원에 위반행위의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기능은 모든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반면, FSA가 직접 위반행위의 원상회복을 강제하는 권한은 FSA에 의하여 금융행위가 승인된 인가업자에 대하여서만 가능하다.

원상회복과 관련된 권한 행사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고려하여 이루어 지는데, 위법행위로 발생한 이익이나 손해를 수치화 할 수 있는지 여부, 위법행위로 영향 받은 금융 소비자의 수, 권한 행사로 FSA에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금융소비자의 혜택과의 비교, 여타 구제제도를 통한 구제 가능성, 피해 당사자의 사적 구제능력 등이 고려대상에 포함된다(Handbook EG 11).

### 6) 범법행위에 대한 기소(Prosecution of criminal offense)

FSA는 FSMA 및 그 종속법의 위반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FSMA section 401, Handbook EG 12).

## 나. 일본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제3장 제2절 제1관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규칙(통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통칙에는 판매·권유 국면에서의 행위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제2관부터 4관까지는 투자조언업무, 투자운용업, 유가증권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통칙에 덧붙여 부과되는 특칙

이 각각 업무별로 마련되어 있다.

투자성이 강한 예금·보험·신탁 등의 판매·권유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상품거래법의 행위규제를 개별 업법<sup>52)</sup>에서 준용하고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의 광고규제(제37조), 계약체결 전 서면교무의무(동법 제37조의 3), 계약체결 시 서면교부의무(동법 제37조의 4), 요청받지 아니한 투자권유 등의 금지(동법 제38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동법 제39조)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 1) 광고규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광고에 대한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광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해당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등록번호 및 고객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7조 제1항). 또한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현저하게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37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에 처한다(법 제205조 제10호, 제11호). 보험업법과 은행법에서는 명시적인 광고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

52) 각각 보험업법 제300조의 2, 은행법 제13조의 4에서 준용

&lt;표 III-5&gt; 광고규제

구분	보험업법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광고 표시 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등록번호 및 고객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함(법 제37조 제1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205조 제10호).</li> </ul>	
광고 표시 금지 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현저하게 사실과 상이한 표시의 금지 및 현저하게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금지(법 제37조 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205조 제 11호).</li> </ul>	

## 2) 서면 교부의무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계약체결 전 서면교부의무, 계약체결 시 서면교부의무 및 고객이 예약하여야 할 보증금의 수취와 관련 있는 서면의 교부의무 등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은 고객과의 계약 체결 전 사업자의 명칭, 주소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 및 고객이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와 보수,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 거래계약 성립 시에는 지체 없이 서면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고객이 예약하여야 할 보증금의 수령과 관련한 서류도 교부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서면교부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6개월 이하

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보험업법과 은행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재규정이 없다.

<표 III-6> 서면교부 의무

구분	보험업법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계약 체결전 서면 교부 의무		· 고객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계약체결 전 교부의무(법 제37조의 3 제1항)	
		-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205조 제12호).	
계약 체결시 서면 교부 의무		· 금융상품 거래계약 성립시 지체없이 서면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함(법 제37조의 4)	
		-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205조 제12호).	
보증금 수령에 관계된 서면의 교부의무		· 고객이 예탁하여야 할 보증금의 수취와 관련된 서면 교부의무(법 제37조의 5)	
		-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205조 제12호).	

### 3) 금지행위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보험업법 및 은행법에서는 모두 허위사실의 고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령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별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다.<sup>53)</sup> 보험업법과 은행법에서는 허위사실 고지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부과되고, 금융상품거래법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두고 있다.

53) 처벌규정의 근거는 각각 금융상품거래법 제38조 제1호, 보험업법 제300조 제1항 제1호~제3호, 은행법 제13조의 3 제1호에 있다.

금융상품거래업에서는 요청받지 아니한 투자권유 및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의 재권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 III-7> 금지행위

구분	보험업법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허위 사실 고지 금지	· 허위사실 고지, 중요사실 불고지 행위 금지(법 제 300조 제1항 제1호~제3호)	· 금융상품거래계약의 체결과 권유를 함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고지 금지(법 제38조 제1호)	· 허위사실 고지 행위 금지(법 제13조의 3 제1호)
	-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317조의 2 제7호).	- 법 제38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198조의 6 제2호).	- 법 제13조의 3(제1호에 관계된 부분에 한함)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 63조의 2).
요청받지 아니한 투자 권유 등의 금지		· 요청받지 아니한 투자 권유, 권유를 받을 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권유하는 행위,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의 재권유 등의 금지(법 제38조 제3호, 제4호, 제5호)	

4) 손실보전 등의 금지

일본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료의 할인 및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 혹은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손실보전 또는 사전·사후적으로 이익을 제공하여 줄 것을 약속 혹은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에 처한다. 은행업의 경우 특별이익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 III-8> 손실보전 금지

구분	보험업법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손실보전 등의 금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할인 및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금지(법 제300조 제1항 제5호)	· 손실보전 또는 사전·사후적으로 이익을 제공하여 줄 것을 약속 혹은 제공하는 등의 행위 금지(법 제39조 제1항)	
	-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 혹은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317조의 2 제7호).	- 39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에 처함(법 제198조의 3).	

### 5) 판매자격제도

판매자격제도에서 보험업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은 보험모집 및 금융상품 거래업자의 등록거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부과하며,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모집인, 특정소액단기보험모집인 등으로 보험모집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그 외 업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보험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부과된다.

&lt;표 III-9&gt; 판매자격제도

구분	보험업법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등록 요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 모집인 및 중개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의 등록을 받아야 함(법 제276조, 제286조)</li> <li>· (등록거부 요건규정)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류 규정(법 제279조, 제289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상품거래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등록을 받아야함(법 제29조).</li> <li>· 등록거부 요건규정(법 제29조의 4 제1항)</li> </ul>	
모집 자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할 수단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317조의 2 제5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할 수단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198조 제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모집인, 특정소액단기보험모집인 등으로 보험모집의 제한을 둠(제27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75조 제1항 각호에서 언급한 자가 아닌 자가 보험 모집을 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제317조의 2).</li> </ul>		

## 6) 설명의무

보험업법 및 은행법에서는 보험모집인과 은행대리업자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2000년 제정된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금융상품판매법)<sup>54)</sup>에서는 예금·보험·유가증권 등의 폭넓은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하여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의 특칙을 정하고 있다.

54) 2006년 6월 그 내용이 개정되어 설명의무에 있어 대상과 범위가 확충되었다.

동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설명의무와 단정적 판단의 제공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설명의무 위반과 단정적 판단의 제공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의무를 지우는데 배상할 손해액은 원금손실액에 한정된다.<sup>55)</sup>

<표 III-10> 설명의무

구분	보험업법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설명 의 무	· (고객에 대한 설명)보험모집인은 보험모집행위시 소속 보험회사의 상호 및 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법 제294조).		· (고객에 대한 설명 등)은행대리업자는 은행대리행위시 소속은행의 상호 및 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법 제52조의 44).

### 7) 고객에 대한 성실의무 및 적합성의 원칙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금융상품 거래업자의 고객에 대한 성실의무 및 적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업법에서도 보험중개인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상품거래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55) 원금손실액은 금융상품 판매에 따라 고객이 지불한 금전 및 지불해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금융상품의 판매에 의해 고객이 취득한 금전 및 취득할 금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표 III-11> 적합성원칙

구분	보험업법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고객에 대한 성실의무	· (보험중개인의 성실의무)보험중개인은 고객을 위해 성실하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매개하여야함(법 제299조).	· 고객에 대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법 제36조)	
적합성의 원칙		· 금융상품거래업자는 투자자의 의향과 실정에 적합한 투자권유와 거래를 하여야 함(법 제40조).	

## IV. 영업행위규제 차이 개선방안

제 3장에서 보험산업의 영업행위규제<sup>56)</sup>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업과 은행업간의 규제내용 및 차이점을 조사하였다. 권역별 영업행위규제의 차이점 분석에서 규제의 중복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적합성원칙과 법령상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불형평성 문제에 대해 해외사례를 제 4장에서 조사하였다. 앞서 살펴본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중 적합성원칙 및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하여야 한다. 적합성원칙의 경우 보험산업에 대한 특수성<sup>57)</sup>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향후 모든 보험상품에 적합성원칙을 적용할 경우 보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편,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각기 상이한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재체계의 정비와 필요하다. 제재조치를 정비함에 있어서 누가 규제의 적용대상자인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즉,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재조치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의 벌칙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에 향후 적합성원칙을 보험산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비하여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먼저 살펴본다. 이어서 제재체계의 불형평성 정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개인과징금제도의 도입 방안과 부과대상 행위에 대해 검토한다.

### 1. 적용대상 상품의 명확화

적합성원칙은 증권 등의 투자권유자가 투자자의 의뢰를 받을 경우, 투자자의 재산상황이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할

---

56) 약관제도, 판매자격제도, 상품설명제도, 불완전판매금지제도, 변액보험모집제도, 광고제도 등이 있다.

57) 타 금융권의 경우 고객이 회사를 방문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보험산업의 경우 고객을 지속적으로 방문·권유하여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의무를 말한다. 적합성원칙은 선진국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유래된 제도로서, 금융시장의 성숙도에 맞추어 적합성원칙도 발전하여 왔다. 영국의 경우 보험상품에 적합성원칙 도입 시 추상적인 개념을 먼저 도입한 후 규제 성숙도와 금융시장의 발전 속도에 따라 적용범위의 확대 및 강화 등으로 제도를 보완해 왔다. 일본은 영국의 사례를 모델로 적합성원칙을 도입하였으나 금융시장 제반환경 및 규제성숙도를 고려하여 영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 체제 이전의 적합성원칙을 추구하였다. 은행 및 보험상품은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도 2006년 개정된 보험업법에서 일부 보험상품에 한정하여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시장 및 규제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영업행위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합성원칙을 적용할 대상상품을 최소화하고, 적용상품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회사가 적합한 상품의 권유를 위해 노력토록 하는 자율규정화를 통해 자율적 정착을 유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입법 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적합성원칙을 포함시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동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회사 및 판매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고객의 연령, 재산상황, 가입목적 등을 파악하고 확인(서명 등)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적용상품과 확인내용, 유지관리기간 등을 규정토록 위임하고 있다.<sup>58)</sup> 그러나 동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차용하여 보험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중 규제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적합성원칙의 보완을 위하여 먼저 시행령에 위임할 보험상품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의 정의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정 시 보험상품의 경우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원본에서 제외시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고, 변액보험 중 만기시 기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보증하는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정 시 '원본' 범위에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해지수수료에 포함시켜 원본에서 제외하여 일반보험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었으나, 만기

58) 보험업법 개정안 보도자료에는 적합성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부는 투자성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에 우선 적용하고 적용대상은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분석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투자자로 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기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보증하는 변액보험의 제외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변액보험의 경우 중도해지 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하더라도 해지 당시 특별계정에 투입된 저축보험료 부분에 손실이 있는 경우 원본손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sup>59)</sup>

<표 IV-1>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옵션(원본보장) 유형

	변액보험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최저보증옵션	최저사망보험금 (기납입보험료 이상)	최저보증연금액 (기납입보험료 이상)	최저사망보험금 (기납입보험료 이상)
금융투자상품 적용예외	최저사망보험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상품	최저보증연금액이 기납입 보험료 100%이상 보증	최저사망보험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상품

## 2. 상품구분에 따른 고객정보수집 서류의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에 적합성원칙이 도입될 경우 규제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sup>60)</sup> 보험업을 제외한 타 금융권은 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주로 고객이 회사를 방문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고 수집에도 어려움이 없지만, 보험은 비자발적 상품으로 먼저 고객을 발견하는데서 시작하여 지속적인 방문과 권유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체결 전 고객정보를 파악해야 될 경우 영업의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sup>61)</sup> 특히, 보험산업은 고객에게 무리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상품

59)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차관회의 결과 보도자료(금융위 홈페이지, 2008년 8월 17일)에서 “원본손실이 중도해약시에만 발생하는 보험상품이라면 ‘해지수수료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가능”하다고 하였다.

60)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적합성원칙의 적용상품으로 투자성 변액보험 상품을 예시하였지만, 시행령에서 적용상품과 확인내용, 유지관리 기간 등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61) 현재도 고객의 보험내용분석 등을 위하여 모든 생보사가 고객정보 동의서, 청약서 등을 통하여 고객의 수입, 재산상황 등을 수집하고 있으나 고객이 정보제공을 꺼려하여 응답률이나 응답의 정확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상품판매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험상품에 따라 적합성의 원칙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본보장형 변액보험 상품의 경우 투자성 변액보험 상품보다 투자위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양과 질이 투자성 상품보다는 적은 것이 비용 면에 있어서 효율적일 것이다. 즉, 향후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표준안 제정 시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의 적합성원칙 적용을 공통으로 받는 상품의 경우와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 보험상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서류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62)</sup>

### 3. 고객의 정보제공 거부 시 적용 제외

소비자가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때나 고객이 고위험군의 상품을 스스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적합성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하고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적합성원칙 규정을 오랫동안 적용해온 영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객의 정보수집 활동의 적용 예외 기준을 두고 있다. 고객이 특정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에 적합성원칙을 유예하거나, 고객이 일부 정보를 밝히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한 최소 정보를 근거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금융투자업 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sup>63)</sup> 따라서, 보험산업에서도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합성원칙 적용에 대한 예외를 두도록 해야 한다.

62) 일본에서도 은행 및 보험상품은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업법에서 일부 보험상품에 적합성원칙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63)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라목 "(2)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한 투자자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투자자. 다만, 당해 투자자가 그 투자자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된 정보의 범위내에서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적합성원칙 적용 예외를 두고 있다.

## 4. 보험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분류제도 필요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의 투자위험 감수능력 기준으로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분류하였다. 고객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은 투자상품과 보험상품에 대해 고객분류제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고객분류제도는 투자상품과 보험상품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상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즉, 투자상품은 투자위험을 투자자가 책임지는 반면, 보험상품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고유의 리스크 전가 등을 주목적으로 보험급부를 보험회사가 보장한다. 그러므로 보험상품은 투자상품과 달리 보험고유의 리스크규모나 거래경험 유무에 따른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준용하여 전문보험소비자의 개념이 자산규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sup>64)</sup> 이는 개정안이 자본시장법을 차용하여 보험산업에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이의 수정이 필요하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단체보험 및 기업성 손해보험 소비자의 경우 보험안내자료의 일부 제공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들 소비자를 전문소비자로 인정하고 있다. 비상장기업을 포함한 법인은 보험가격 수준에 따라 인수보험회사를 자주 변경하는 등의 기업의 속성으로 인하여 재계약 또는 동일한 리스크에 대해 보험가입이 빈번하다. 따라서 보험거래의 경험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구분이 필요하며, 이를 시행령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4) 보험업법 개정안 제2조 제20항의 보험소비자 분류 조문을 살펴보면, “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구비여부,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로 되어있다.

## 5. 제재조치의 개선

### 가. 금융업권간 제재의 불형평성 정비

법령상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살펴보면 금융권역별 제재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한 사항이 존재하거나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즉, 동일 또는 유사 사항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일부 업법에서는 제재 사항이 있으나 다른 업법에서는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제재규정이 개별 업법별로 존재하나 제재의 내용이나 정도가 상이한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등록요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업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자격취소나 등록의 효력정지 등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과징금<sup>65)</sup>을 부과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은행법에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보험업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광고표시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해당보험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투자업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업의 경우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제재근거는 은행법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광고표시금지사항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자본시장법 체제하에서 고유업무에 대하여서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업무에 적합한 제재원칙 및 방식을 인정하되 동일한 위반행위나 유사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금융업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재체계를 정비하고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한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이는 동일한 위법행

65) 당해 보험회사 또는 판매전문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 100분의 25이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위에 대해 동일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벌칙부과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재조치를 개선하는 경우 정부는 금융산업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요과제로 삼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제재조치를 정비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벌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시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금융산업 종사자들에게 소비자 보호를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나. 개인과징금 제도의 도입

영업행위규제 위반을 포함한 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현재 금융업자와 법인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금융투자업에서 발행공시의무위반과 관련해서만 개인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개인이 속해있는 법인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 법인은 이러한 금전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내부통제를 통해 법인에 속해있는 직원들을 관리·감독할 동기가 부여되지 만,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법인은 이러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용한 직원의 관리·감독의 동기부여가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즉, 법령위반을 한 개인에 대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 전체에 걸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형사벌에 의한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 할 수가 없다. 또한, 유가증권의 임의매매·과당매매의 예와 같이 금융기관의 직원이 해당 위법행위의 주체로 나서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제재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sup>66)</sup>

66) 금융위원회는 2008년 8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임직원 및 대주주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다.

## 다.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의 구체화

금융위원회는 2008년 8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재제도를 비금전적 제재에서 금전적 제재 위주로 제재제도를 개편하고, 과징금제도를 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부과대상 행위를 과징금부과가 부적절한 경우<sup>67)</sup>를 제외한 모든 위법행위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를 모든 위반행위로 적용하는 방식의 일반적·추상적 규정은 금융감독당국에게 제재운영에 있어서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과 더불어 포괄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영국의 경우 과징금 제도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FSA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과하여 금전적 처벌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각 업법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금융 선진국이 운영 중인 금전적 제재 위주의 제재제도를 도입하여 신분 제재 위주의 제재체계를 금전적 제재 위주로 전환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금융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점진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금전적 제재 위주의 제도 개선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는 개개의 위반행위별로 과징금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미국이나 영국과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

67) 특정의무 준수행위 부재,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이 이에 속한다.

## V. 결론

우리나라는 금융의 겸업화 및 통합화 추세에 맞추어 자본시장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보험업법 개정안과 가칭 금융상품판매법 제정 추진은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더욱 더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운영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필연적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규제를 수반하게 된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법이라는 통합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변화된 금융제도를 영업행위규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권역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각 권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경우, 적합성의 원칙은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에서 규제의 중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영업행위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각 권역별로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재를 취하고 있다.

미국, 영국 및 일본 등 금융선진국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매우 중요시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은 올바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제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을 제정하였지만, 은행업과 보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별 업법에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업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다. 금전적 제재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는 영국 및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해당 업법에서 개별 위법행위에 대한 근거를 두고 금전적 제재를 취하고 있다.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선진국의 제도를 바로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성숙도에 견주어 보았을 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금융선진국을 포함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방향은 수립하되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내 보험시장의 발달정도와 더불어 규제정책의 성숙도에 비추어 점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 추진관련 보도자료(총 10회), 2008. 04 ~ 06.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보도자료)』, 2008.8.
- 김민식, 『변액보험에 관한 법적연구』, 한양대 대학원, 2008.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 맹수석, 「변액보험제도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연구』, 제39호, 2003.
- 서동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적합성원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9.
- 손영화, 「증권법상 적합성원칙의 보험상품 판매, 권유에 대한 적용」, 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제8권 제1호, 2007.
- 신상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제483호, 2009.
- 안수현, 「금융행정 집행수단으로서 과징금제도 검토」, 서울대금융법센터, 『BFL』, 제32호, 2008.
- 유지호·최원,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 2008.
- 이기형,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보험연구원, 2008.
- 이상우,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비교』, 보험연구원, 2008.
- 이용찬, 「금융업법상 금전적 제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 이종한·전창한·송원근, 『주요국 금융규제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 재정경제부, 『금융법률의 기능별 개편에 따른 제재규정 체계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2004.
- 정경영, 『영국과 미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관련법제 연구』, 법제처/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 차일권·이상우,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보험개발원, 2007.

-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 한국개발연구원, 『통합금융법 제정을 위한 업무영역·제재·적기시정조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2004년도 한국금융학회 금융정책 심포지움 KDI 발표자료.
- 한기정,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보험개발원, 2005.  
 , 「금융투자업법의제정이 보험업법 개정에 미칠 영향」,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연구』, 제51호, 2007.
- Akerlof, G., "The market for "Lemons":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4, 1970, pp.488-500.
- FSA, Conduct of Business Source Book, 2007.
- FSA,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 Book, 2008.
- Sclafane, S., "Finite Challenges Prompt New Insurance Definition", National Underwriter Property & Casualty, September 4, 2006
- Goodhart, C., P. Hartmann, D. Llewellyn, L. Rojas-Surez and S. Weisbrod, Financial Regulation: Why, how and where now?, Routledge, 1998.
- Llewellyn, D., "The Economic for Financial Regulation", Occasional Paper Series 1, FSA, 1999.
- Todd, Jerry D., Kueber, Michael A., O'Keefe, Patrick,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Insurance : is it challenging", CPCU Journal, Vol.53, Winter 2000.

<http://www.fsa.gov.uk>

<http://www.fsc.go.kr>

<http://www.moleg.go.kr>

<http://www.naic.org>

<http://www.ins.state.ny.us>

## [부록 1] 2009년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과제(보험업)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1	유사보험 감독 일원화	관계부처의 동의를 전제로 5대 유사보험(우체국 보험, 4대 공제)에 대해 보험업법 적용 추진	보험업법 개정	규제형평성 제고
2	보험회사의 사업비 후취방식 허용	사업비 후취방식 도입근거 마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보험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
3	보험대리점의 등록 완화	법인대리점의 유사격자 4인 이상 보유기준 폐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보험대리점 영업부담 완화
4	사이버몰 이용 모집시 준수사항 완화	사이버몰을 이용한 모집시 준수사항 중복규제 폐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법령의 명확성 제고
5	보험회사의 사망 보험금 설계시 최저한도 규제완화	사망보험금을 납입보험료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규제완화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확대
6	보험상품의 인터넷 공시 완화	단체생명보험 등 일부상품에 대해 인터넷공시에서 제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사의 부담경감
7	보험상품별 적용 이율 차등적용 완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대해 단일 보장이율 적용 예외를 인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상품 개발기회 확대 및 소비자의 보험상품선택권 제고
8	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요건 완화	대리점 계약조건 등 계약기간(1년이상) 관한 사항 폐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의 자율성 제고
9	보험대리점의 의무 완화	보험대리점의 의무 중 법령 준수 의무, 신의성실 원칙 등 폐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중복규제 삭제
10	보험중개사 등록 개선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및 난이도 개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중개사 시험응시자의 부담완화
11	보험중개사의 검정신고를 사후 보고로 전환	보험중개사의 구분별 중개업무 수행을 위한 금감원 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중개사 신고절차 완화
12	보험중개사의 지점설치 규제완화	보험중개사의 지점설치 및 폐지 관련 규제 폐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중개법인의 자율성 제고
13	보험 모집질서 확립	보험 모집과 관련한 규제 중 상징적인 내용 삭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법령규정의 명확성 제고

## [부록 2] 변액보험 판매규제

	투자성 (자본시장법)	원금보장형 (보험업법)
신의 성실 의무	법 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감독규정 제4-31조의 2(변액보험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제1항 2호
	<p>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p> <p>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2. 모집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금지
투자 자 구 분	법 제46조 (적합성 원칙 등)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3(적합성 원칙) 도입
	<p>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및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및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보험회사 및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확인 받아야 할 내용 및 확인 내용의 유지·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설 명 의 무</p>	<p>법 제47조 (설명의무)</p>	<p>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2(보험상품 설명의무 도입), 법시행령 제42조(보험안내자료 기재사항 등), 감독규정[(제7-45조 ①,③)(보험상품의 공시 등),</p>
	<p>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p> <p>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09.2.3&gt;</p>	<p>제42조(보험안내자료 기재사항 등)</p> <p>① 법 제9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는 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변액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li> <li>2. 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li> </ol> <p>②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05.3.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li> <li>2.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li> <li>3.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li> <li>4.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li> </ol> <p>③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p>

	<p>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li> <li>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li> <li>3.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li> <li>4.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li> </ol> <p>④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정보취득자의 이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안내자료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hr/> <p>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p> <p>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 및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한 가입설계서,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 중 기업성보험의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06.11.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삭제 2006.11.30.&gt;</li> <li>2.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변경전 보험약관 및 판매중지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관을 포함한다.)</li> <li>3. 금리연동형보험(제5-6조제1항제2호의 계약을 제외하며, 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은 포함)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율 포함) 등&lt;개정 2007.6.28., 2009.7.7.&gt;</li> <li>4.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lt;개정 2005.12.29.&gt;</li> </ol>
--	---

		<p>가.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나. 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 가격 및 수익률          다.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라.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포함) 운용설명서          &lt;개정 2005.12.29.&gt;</p> <p>5. 제5-6조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lt;개정 2007.6.28, 2009.7.7.&gt;</p> <p>가.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나. 직전 3년간 예정이율(금리연동형보험의 적용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을 포함한다.) 및 직전 3년간 이자율차 배당율</p> <p>6.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p> <p>7.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본점에서 다음 각호의 서류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1. 기초서류          2.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계약자의 경우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lt;개정 2005.12.29.&gt;</p> <p>가. 자산명세서          나. 기준가격대장          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라. 유가증권등매매거래내역서</p> <p>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2          (보험상품 설명의무)</p>
--	--	--

		<p>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p> <p>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 및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p> <p>④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지급 또는 불지급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p>
<p>NYC Rule</p>	<p>법 제46조의2 (적정성의 원칙 등)</p> <p>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p> <p>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p>	<p>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3(적합성 원칙) 도입</p> <p>보험상품 판매 권유시 소비자의 소득, 보험계약의 목적, 과거 보험계약 경험 등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Rule'을 도입</p> <p>-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p> <p>* (적용상품) 투자성 보험상품인 "변액</p>

	<p>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보험"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 * (적용대상)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분석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만 적용</p>
<p>부당권유 금지</p>	<p>법 제49조 (부당권유의 금지)</p> <p>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li> <li>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li> <li>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li> <li>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li> <li>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li> </ol>	<p>감독규정 제4-31조의 2(변액보험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p> <p>①법 제83조 제1항 각호의 자가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권유 행위</li> <li>2. 모집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li> <li>3.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 행위</li> <li>4.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자료를 제공하는 행위</li> </ol> <p>* 불초청권유 및 재권유 규제는 보험상품 적용제외</p>
<p>투자권유준칙</p>	<p>법 제50조 (투자권유준칙)</p>	<p>감독규정 제4-31조의 2(변액보험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p>

	<p>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등에 대하여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2.3&gt;</p> <p>②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준칙을 정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권유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협회는 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p>	<p>②협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다. &lt;본조 신설 2005.12.29.&gt;</p>
<p>광고 규제</p>	<p>법 제57조 (투자광고)</p> <p>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협회와 금융투자업자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투자광고를 할 수 있으며,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은 그 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p> <p>② 금융투자업자(제1항 단서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p>	<p>감독규정 제4-35조의2(광고의 내부통제)</p> <p>①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작 및 내용에 있어서 보험업법 및 광고에 관한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p>②변액보험상품(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상품 포함)을 광고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li> <li>2. 과거의 운용실적 또는 해약환급금, 보험금 등의 예시를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용실적 및 예시율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li> <li>3.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li> </ol> <p>③협회는 보험회사의 광고와 관련하여</p>

	<p>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투자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li> <li>2.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li> <li>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li> </ol> <p>④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서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투자광고에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⑥ 그 밖에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여 보험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광고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로부터 사전에 광고물을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p> <p>&lt;본조 신설 2005.12.29.&gt;</p>
손해배상	법 제48조 (손해배상책임)	법 제102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p>책임</p>	<p>① 금융투자업자는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p>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p>	<p>①보험회사는 그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p> <p>③ 「민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개정 2007.7.19&gt;</p>
<p>모집 자격 제도</p>	<p>시행령 제56조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p> <p>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해당)(제1항)로서 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육을 마칠 것(제2항)</p>	<p>시행령 제56조 (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제441조(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p> <p>①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을 설정·운용하는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lt;개정 2004.3.22&gt;</p> <p>②법 제83조제1항 각호의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제441조(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 ①법 제83조 각호에서 정한 자가 변액보험계약 또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p>

		<p>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lt;개정 2005.1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을 제외한 변액보험계약 : 협회에서 실시하는 변액보험모집 자격시험 또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lt;개정 2005.12.29.&gt;</li> <li>2.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 협회에서 정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교육과정&lt;개정 2005.12.29.&gt;</li> </ol> <p>②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교육과정의 운영·관리와 교육 이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lt;개정 2005.12.29.&gt;</p>
--	--	---

## [부록 3] 금융기관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 금융기관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제5조 (제제대상 위법· 부당행 위)	<p>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제의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대만히 한 경우</li> <li>2.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li> <li>3.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악화를 초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li> <li>4.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li> <li>5.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한 경우</li> <li>6. 감독자로서 감독을 대만히 한 경우</li> <li>7. 기타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li> </ol>
제17조 (기관에 대한 제제)	<p>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제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lt;개정 2001.2.28, 2004.3.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lt;개정 2006. 8.31.&gt;</li> <li>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lt;개정 2006.8.31.&gt;</li> <li>다.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업무를 계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li> <li>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lt;개정 2006.8.31.&gt;</li> </ol> </li> <li>1.&gt;</li> <li>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삭 제 &lt;2006.8.31.&gt;</li> <li>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lt;개정 2006.8.31.&gt;</li> <li>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부당행위의 중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 영업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li> <li>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li> </ol> </li> <li>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li> </ol>

-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된 경우로서 위법·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영업점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위법·부당행위 중지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신속히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5. 계약이전의 결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6.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금융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위법·부당내용을 일간신문, 정기간행물 기타 언론에 공표하거나 영업점에 게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기관경고  
 가.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4)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5)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6) 위법·부당행위가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중대한 내부통제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 다. 최근 1년 동안 내부통제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1) 당해 금융기관의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이하같다)의 100분의 2 (자기자본의 100분의 2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가)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100억원  
 (나)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이상 2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300억원  
 (다) 자기자본이 2조5천억원 이상인 경우 : 500억원  
 (2) 손실(예상)금액이 (1)에 미달하더라도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여 중대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
- 라. 삭 제 <2004.12.30>  
 마. 삭 제 <2004.3.5>
8. 삭 제 <2004.3.5>  
 9. 기관주의

	<p>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lt;신설 2005.8.31.&gt;</p> <p>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lt;개정 2004.3.5., 2005.8.31.&gt;</p>
제18조 (임원에 대한 제재)	<p>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lt;개정 2001.2.28, 2004.3.5&gt;</p> <p>1. 해임권고</p> <p>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p> <p>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들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p> <p>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들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p> <p>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p> <p>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p> <p>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p> <p>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p> <p>3. 문책 경고</p> <p>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p> <p>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p> <p>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p> <p>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p> <p>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p> <p>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4. 주의적 경고</p>

	<p>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p> <p>5. 주의</p> <p>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lt;신설 2005.8.31. &gt;</p> <p>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t;개정 2005.8.31. &gt;</p> <p>③ 금융위가 금융기관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정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p>
<p>제19조 (직원에 대한 제재)</p>	<p>① 감독원장은 금융위설치법, 금융업관련법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lt; 개정 2005.8.31. &gt;</p> <p>② 감독원장은 직원의 위법·부당사실을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적의조치하도록 의뢰하거나 금융위에 이를 건의할 수 있다. &lt;신설 2004.3.5. &gt;</p>
<p>시행 세칙제 45조 (직원 에 대한 제재)</p>	<p>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2004.2.27&gt;</p> <p>1. 면직</p> <p>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p> <p>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p> <p>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p> <p>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p> <p>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p> <p>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p> <p>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p> <p>3. 감봉</p> <p>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p> <p>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p>

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 신설 2005.8.26. >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적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적의결정하여 조치하도록 의뢰(이하 '조치의뢰사항'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4.2.27., 2005.8.26., 2006.8.31., 2008.12.31.>

③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2.27, 2008.12.31.>

1.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위법·부당사항(직원이 주행위자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8.31.>

2.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행위, 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행위,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임의매매·불공정거래행위,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제공·무자격모집위탁 등 고질적인 모집질서 위반행위 <개정 2006.8.31, 2008.9.1, 2008.12.31.>

3. 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보고서 허위제출, 검사자료 제출거부 등 금융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감독·검사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부당사항 <개정 2006.8.31.>

4. 소규모 금융기관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 취약 등으로 자율적인 제재가 곤란하거나 기타 당해 검사실시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 ■ 연구보고서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 조사보고서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2007.4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7.10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 전략 활용 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 정책보고서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6.12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복,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직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 영문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 CEO Report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금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정기간행물

###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년3회
- 보험회사 재무분석 / 계간



# 『 도서회원 가입안내 』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속간행물</li>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li> <li>· 보험회사재무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속간행물</li>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li> <li>· 보험회사재무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속간행물</li>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li> <li>· 보험회사재무분석</li> </ul>	-보험통계월보 (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li> <li>-영문보고서</li> <li>-보험통계월보</li> <li>-손해보험통계연보</li> </ul>	-보험통계월보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5, 9080    팩스 : (02)3775-9102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납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 저 자 약 력

### 서 대 교

Kansas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E-mail : dkseo@kiri.or.kr)

### 김 미 화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현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E-mail : mhkim@kiri.or.kr)

조사보고서 2010-2

###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발 행 일 2010년 3월 일  
발 행 인 이 태 열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775-9000

---

ISBN 978-89-5710-102-5

정가 10,000원